[별지1]

우체국예금 약관 전문

2021. 12. 9.

우정사업본부

KOR 우정사업본부

목 차

< 기본약관 >

1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 1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 9
3 거치식예금 약관 ····· 11
4 적립식예금 약관 ····· 12
5 비과세 종합저축 약관 ····· 14
6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 17
7 수익증권저축약관 ····· 20
8 우체국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 ····· 29

< 상품특약 >

1-1 듬뿍우대저축예금 특약 ····· 32
1-2 e-Postbank예금 특약 ····· 34
1-3 기업든든MMDA통장 특약 ····· 37
1-4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 39
1-5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특약 ····· 42
1-6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특약 ····· 45
1-7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특약 ····· 48
1-8 우체국 다드림(多Dream)통장 특약 ····· 50
1-9 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특약 ····· 58
1-10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 특약 ····· 61
1-11 우체국 생활든든통장 특약 ····· 64
1-12 우체국 페이든든+통장 특약 ····· 68
1-13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 특약 ····· 72
1-14 우체국 청년미래든든통장 특약 ····· 74
1-15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특약 ····· 77
1-16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 특약 ····· 79
1-17 우체국 취업이룸통장 특약 ····· 82

2-1 챔피언정기예금 특약 ····· 85
2-2 이웃사랑정기예금 특약 ····· 89
2-3 e-postbank정기예금 특약 ····· 93
2-4 2040+α정기예금 특약 ····· 96
2-5 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 100
2-6 우체국 ISA 정기예금 특약 ····· 103
2-7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특약 ····· 106
2-8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 특약 ····· 110
2-9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특약 ····· 115
2-10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특약 ····· 119
2-11 우체국 e-공동구매 정기예금 특약 ····· 124

3-1 2040+α자유적금 특약 ····· 127
3-2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 특약 ····· 131

3-3 우체국 다드림(多Dream)적금 특약 ····· 136
3-4 우체국 아이LOVE적금 특약 ····· 141
3-5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 특약 ····· 146
3-6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 150
3-7 우체국 가치모아적금 특약 ····· 155
3-8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특약 ····· 159
3-9 모바일 푸르니 적금 ····· 163

< 판매중지 상품특약 >

4-1 웰빙우대저축예금 특약 ····· 166
4-2 주니어우대저축예금 특약 ····· 168
4-3 2040$^{+\alpha}$저축예금 특약 ····· 170
4-4 우체국 청춘연금통장 특약 ····· 173
4-5 우체국 e-기업통장 특약 ····· 176
4-6 우체국 100일$^{+}$주머니통장 특약 ····· 178
4-7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특약 ····· 181

5-1 I-Card 정기예금 특약 ····· 184
5-2 EVERRICH 회전식정기예금 ····· 187
5-3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특약 ····· 189
5-4 실버우대연금예금 특약 ····· 192
5-5 그린보너스정기예금 특약 ····· 196
5-6 우체국 S뱅킹정기예금 특약 ····· 199
5-7 주니어우대정기예금 특약 ····· 201
5-8 스마트정기예금 특약 ····· 204
5-9 실버우대정기예금 특약 ····· 207

6-1 이웃사랑자유적금 특약 ····· 211
6-2 가족多사랑(정기·자유)적금 특약 ····· 213
6-3 주니어우대자유적금 특약 ····· 215
6-4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특약 ····· 218
6-5 가계우대정기적금 특약 ····· 220
6-6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특약 ····· 222
6-7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 특약 ····· 224
6-8 EVERRICH 자유적금 특약 ····· 226
6-9 학생장학적금 특약 ····· 229
6-10 우체국 행복가득희망적금 특약 ····· 230
6-11 우체국 재형저축 특약 ····· 233
6-12 Young모아 e적금 특약 ····· 238
6-13 우체국 다모아 e적금 특약 ····· 243
6-14 우체국 Smart퍼즐적금 특약 ····· 248
6-15 우체국 e-포인트 적금 특약 ····· 252
6-16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 특약 ····· 256

7-1 환매조건부채권 특약 ····· 259

1.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우체국과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체국은 이 약관을 창구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체국 창구(이하 '개설우체국'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우체국 창구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예금주는 우체국에서 내준 통장(증서 ·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표 ·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 ·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 "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우체국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 금】

① 예금주는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표·증서 (이하 '증권'이라 한다)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우체국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우체국 또는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우체국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체국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일 때 우체국은 소정의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우체국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우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무통장 입금일 때에는 입금 의뢰인)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하였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 줄 수 있다.

제9조【이 자】

① 이자는 10원을 단위로(10원미만 절사)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우체국은 예금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뀐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이율을 바뀐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 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 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휴면예금 및 국고귀속】

① 우체국은 예금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고귀속 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국고귀속된 휴면예금을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급청구할 수 있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예금주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예금주가 자동이체 · 전산통신기기 · 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에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예금주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예금주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신고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통보시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우체국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할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우체국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금주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

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우체국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우체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우체국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우체국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예금주가 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예금주가 개설 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우체국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예금주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우체국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 비밀보장】

① 우체국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우체국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및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변경】

① 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예금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우체국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약관적용의 순서】

①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어음교환업무규약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업무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23조【이의 제기】

예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분쟁처리기구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예금거래 특례】

저축예금 가입자 중 가계수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청구서, 현금카드 또는 가계수표 등에 의하여 인출할 수 있다.

제3조【이자】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예금의 이자는 상품별 해당 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 다음날(이하 ‘지급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우체국이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우체국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다.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거래중지계좌】

우체국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 계좌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예금주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할 때에는 우체국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고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3. 잔고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제5조【자동이체】

① 급여, 연금배당금 등 정기적 수입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등 정기적 지급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체국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상의 제반 약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지급금의 자동이체는 이체지정일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인출하여 자동 납입되므로 이체지정일의 지급가능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동이체 지정일에 지급 가능액이 부족하여 우체국이 자동이체 처리를 못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거치식예금 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되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뀐 날부터 바뀐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우체국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우체국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적립식예금 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저축금의 입금】

예금주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이자】

①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②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③ 예금주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은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입금지연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체국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한다.

⑤ 이 예금의 이자는 원을 단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이율로 계산한다.

제 5조 【만기도래전 지급】

① 월부금을 전회 납입하고 만기일(이연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것으로서 지연일수로 인해 만기일이 이연된 경우와 월부금 완납후 당초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일반 해약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만기도래전 해약지급이자액 계산시에는 중도해약 지급이자와 만기도래전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이자가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단, 약정지급이자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제6조【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① 예금주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②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③ 예금주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우체국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우체국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자유적립식 예금 특례】

① 자유적립식 예금이란 계약기간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자유적립식 예금은 입금 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③ 자유적립식 예금에는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조,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우체국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예금주에 통보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비과세 종합저축 약관

제1조【적용범위】

비과세 종합저축 (이하 '저축'이라 한다)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등(이하 '예금 등'이라 한다)의 약관(특약 포함)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3조 【대상 예금 등】

우체국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은 제외한다.

제4조 【예치한도】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단,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한다.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다.

제5조 【예치한도 산정】

①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한다.

② 정액(정기)적립식 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예치한도 변경】

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비과세처리】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

제8조 【표시방법】

이 저축 가입자는 신규가입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통장의 표지 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적용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우체국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우체국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저축의 전환여부】

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다.

제12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제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 계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의변경 등】

명의변경 및 양수·양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제14조 【예치한도 초과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

예치한도 초과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비과세 종합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비과세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별 비과세 종합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기관은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수익자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를 이용하는 고객과 우체국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우체국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잔고이전·해지' 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비활동성계좌' 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퇴직급여 계좌대월 약정계좌, 세금우대계좌, 펀드연결계좌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 '활동성계좌' 라 함은 "비활동성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 '소액비활동성계좌' 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6. '휴대폰 인증' 이란 고객이 선택한 거래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7. '간편번호' 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8. '바이오정보' 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9. '바이오인증' 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10. '인증서' 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11. '금융회사' 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참가기관(은행,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비대면채널(“비대면채널” 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 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 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

⑥ 휴대폰 등 동일한 기기에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 이용등록은 자동해지됩니다.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조회】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 제7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우체국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창구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거래가 제한

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9조 【잔고이전・해지】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 제1항제5호의 “소액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지급정지,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잔고이전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현금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서비스에서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기관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제10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우체국은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우체국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12.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5조, 제6조의 시행일은 2020. 12. 10일 부터 시행합니다.

7.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체국”이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우체국이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명거래)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② 우체국은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우체국이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우체국은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식 : 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2. 목적식 : 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치식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 : 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 : 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3. 목표식 :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우체국은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우체국과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우체국은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③ 우체국은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우체국은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저축자는** 우체국으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우체국은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우체국은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우체국은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우체국에 위임한다.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우체국은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우체국은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우체국은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우체국은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우체국과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우체국이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우체국은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축자의 우대)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

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우체국으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우체국은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2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 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우체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체국은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3조(거래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 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우체국이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우체국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우체국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우체국이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우체국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체국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우체국은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17조(통지의 방법)

① 우체국은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우체국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면책)

우체국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체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우체국이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오류처리 등)

① 우체국은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체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① 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체국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체국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우체국은 약관을 우체국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우체국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우체국은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우체국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3조(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우체국은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4조(분쟁조정)

저축자는 우체국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체국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우체국과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8. 우체국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계좌이동서비스 개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해지하고, 우체국 출금계좌로 자동이체를 신규 등록하는 거래입니다.

제2조 (계좌이동서비스 적용 대상 자동이체 정보)

계좌이동서비스 적용 대상 자동이체 정보는 아래의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① 자동납부 : 지로자동이체, 금융결제원 CMS자동이체, 펌뱅킹자동이체 등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자동송금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계좌간자동이체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 (수취인, 입금계좌, 금액, 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에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서비스 입니다.

제3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대상)

계좌이동서비스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좌이동 신청 채널)

고객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좌이동 신청 절차 및 신청 시기)

고객은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계좌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계좌변경은 변경 전 은행 등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변경 후 우체국에 자동이체를 신규 등록하는 서비스이므로 아래의 내용에 유의해서 신청합니다.

① 자동납부 : 요금종류에 따라 출금계좌 변경에 신청일 포함 최대 6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고, 요금 결제일에는 요금청구기관의 출금작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② 자동송금 : 출금계좌변경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출금 또는 미출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체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6조 (계좌이동 완료의 통지)

우체국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계좌이동 신청결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우체국은 계좌이동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① 우체국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우체국 창구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체국은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우체국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좌이동서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계좌이동서비스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

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듬뿍우대저축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듬뿍우대저축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

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0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1조【기타】

① 이 예금은 전자통장 약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을 찾을 때는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e-Postbank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e-Postbank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4조 【가입 및 해지】

①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예금의 가입 및 e-Postbank예금으로의 전환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이 예금의 해지 시 다른 출금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스마트뱅킹 약정은 존속되나, 출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약정도 해지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매 결산기간 마다 이 예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5%p를 제공한다.

1. 이 예금 결산기 평균잔액 50만원 이상 : 연 0.2%p

2. 이 예금으로 급여이체 시 : 연 0.1%p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3. 우체국 스마트뱅킹 이체, 출금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4.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20만원 이상인 경우 : 연 0.1%p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③ e-Postbank예금에서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저축예금 이자율로 변경된다.

④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 12월 첫째 토요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0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1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2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전자통장 약정,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입금 및 지급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채널(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④ 다만, 고객이 요청하거나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금융채널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창구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카드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무통장 출금이 가능하다.

⑤ 저축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한 예금주는 저축예금으로 재전환할 수 있으나 다시 이 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또한, 이 예금에서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이 예금에 신규 가입한 예금주는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 기업든든MMDA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기업든든MMDA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0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1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상계,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을 찾을 때는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 이상에 적용되는 특별금리의 경우, 특별금리 부여기간 30일 종료시, 1회에 한하여 출금 및 입금 거래 없이 재약정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4.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⑦ 「긴급지원복지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⑪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 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다.

제8조【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연 0.5%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1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2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는 제외)
2.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3.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3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이다.(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입금제한】

① 이 예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②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국민연금법 제 54조의 2, 제 58조, 동법 시행령 제 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2조(이하 "관련 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라 한다)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한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이 예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한다.

제8조【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일 경우 연 0.1%p, 5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1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2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는 제외)

2.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3.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3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6.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 책임자
2.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0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 면제기간은 제3조의 가입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면제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선거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 예비후보자등록일 ~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일
2.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 예금 신규 가입일(약정일) ~ 선거일 이후 3개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

※ 약정일 : 선거마다 지정되는 우대서비스 제공 시작일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 창구, 전자금융(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우체국간 또는 다른 은행으로 송금(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2.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수수료 면제
3. 예금잔액증명수수료,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제공수수료 면제
4.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5. 카드발급 수수료 면제
6. “예금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 면제 (최대 5회선)
7. 전자금융 OTP 발급 수수료 면제
8. 타 금융기관[주]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면제

※ 주」타 금융기관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 은행 제휴 CD기 및 VAN사 CD기 제외)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1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2조【기타】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상계,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7.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거래제한】

이 예금의 출금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하다.

제8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2조【과세부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상계,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은 자동이체, 전자금융, 결제성계좌 등 약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8. 우체국 다드림(多Dream)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다드림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1인 다계좌가 가능하다.

구 분	주니어	직장인	사업자	실버	베이직
가입대상자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금융기관 제외)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금융기관 제외)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실적 우대이율은 가입대상자 구분별 거래 실적에 따라 적용한다.
(단, 베이직 통장의 경우 실적 우대이율 미 제공)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 우대이율 제공 조건 >

<table>
<tr><td rowspan="5">실적
우대
이율</td><td>주니어
통장</td><td>o 최고 연 0.4%p
<table><tr><th>실 적</th><th>우대이율 (연 %p)</th></tr><tr><td>1) 결산기 평잔 50만원 이상 이용</td><td>0.1</td></tr><tr><td>2)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td><td>0.1</td></tr><tr><td>3) 우체국 적립식예금 월 납부금 1만원 이상 자동이체</td><td>0.1</td></tr><tr><td>4) 우체국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이용</td><td>0.1</td></tr><tr><td>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td><td>0.2</td></tr><tr><td>6) 우체국 우수고객 또는 채널우대</td><td>0.1</td></tr><tr><td>총 제공가능 우대금리</td><td>0.4</td></tr></table></td></tr>
<tr><td>직장인
통장</td><td>o 최고 연 0.6%p
<table><tr><th>실 적</th><th>우대이율 (연 %p)</th></tr><tr><td>1) 전월 급여이체 시 (단, 신규는 약정기준)</td><td>0.2</td></tr><tr><td>2) 공과금 자동이체</td><td>0.1</td></tr><tr><td>3) 우체국 체크카드 20만원 이상 이용</td><td>0.1</td></tr><tr><td>4)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td><td>0.1</td></tr><tr><td>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td><td>0.2</td></tr><tr><td>6) 우체국 우수고객 또는 채널우대</td><td>0.1</td></tr><tr><td>총 제공가능 우대금리</td><td>0.6</td></tr></table></td></tr>
<tr><td>사업자
통장</td><td>o 최고 연 0.6%p
<table><tr><th>실 적</th><th>우대이율 (연 %p)</th></tr><tr><td>1) 카드 (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td><td>0.2</td></tr><tr><td>2) 공과금 자동이체</td><td>0.1</td></tr><tr><td>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개인사업자·법인 100만원, 단체 50만원)</td><td>0.1</td></tr><tr><td>4) 결산기 평잔 500만원 이상</td><td>0.2</td></tr><tr><td>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td><td>0.2</td></tr><tr><td>6) 우체국 우수고객 또는 채널우대</td><td>0.1</td></tr><tr><td>총 제공가능 우대금리</td><td>0.6</td></tr></table></td></tr>
<tr><td>실버
통장</td><td>o 최고 연 0.6%p
<table><tr><th>실 적</th><th>우대이율 (연 %p)</th></tr><tr><td>1) 연금 수령 실적</td><td>0.2</td></tr><tr><td>2) 공과금 자동이체</td><td>0.1</td></tr><tr><td>3) 우체국 체크카드 20만원 이상 이용</td><td>0.1</td></tr><tr><td>4)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td><td>0.1</td></tr><tr><td>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td><td>0.2</td></tr><tr><td>6) 우체국 우수고객 또는 채널우대</td><td>0.1</td></tr><tr><td>총 제공가능 우대금리</td><td>0.6</td></tr></table></td></tr>
<tr><td>베이직</td><td>o 별도 실적 우대이율 미 제공</td></tr>
</table>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우대이율 조건을 재확인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주니어 통장』

1. 결산기 평잔 5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3. 우체국 적립식 예금 월 납부금 1만원 이상 자동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에서 우체국 적립식 예금으로 월 납부금 1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 적립식 예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1건의 약정이 1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다수의 자동이체 약정 금액을 합산 적용하지 않음
4. 우체국 체크카드 1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한 경우 계좌 기준으로 통합 산정하여 실적 확인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한 고객인 경우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이율 적용
   ※ 2016. 09. 18일 이후 신규 가입고객부터 적용
   ※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제외 대상
   - 활동계좌, 정리계좌 중 수시입출식 예금을 1개 이상 보유한 고객
   - 1년 이내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
   - 단, 국고 귀속된 수시입출식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첫 고객에 해당
6. 우체국 우수고객은 창구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예금, 보험 우수고객은 매 결산일 기준, 우편 우수고객은 가입 시 전년도말 기준이며 채널 우대는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 적용

『직장인 통장』

1. 전월 급여이체는 우체국 급여 약정 거래를 한 1인 1계좌에 한하여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2. 공과금 자동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에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 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 단, 계좌 간 자동이체 (자행, 타행), 예약이체 제외

3. 우체국 체크카드 2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한 경우 계좌 기준으로 통합 산정하여 실적 확인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4.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및 6. 우체국 우수고객 또는 채널우대는 '『주니어 통장』' 실적 산정 기준과 동일

『사업자 통장』

1. 카드 (신용·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결산기간 동안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약정을 한 해당 결산기간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결산기간부터는 이용실적이 확인 되어야 우대이율 제공
2. 공과금 자동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에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 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 단, 계좌 간 자동이체 (자행, 타행), 예약이체 제외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은 매 결산기간 중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개인사업자·법인 100만원, 단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한 경우 계좌 기준으로 통합 산정하여 실적 확인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4. 결산기 평잔 50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및 6. 우체국 우수고객 또는 채널우대는 '『주니어 통장』' 실적 산정 기준과 동일

『실버 통장』

1. 연금 수령은 매 결산기간 중 이 예금으로 4대 연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 4대 연금 실적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글자가 있는 경우에만 실적에 해당되며, 개인이 입금한 것은 제외
2. 공과금 자동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에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 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 단, 계좌 간 자동이체 (자행, 타행), 예약이체 제외
3 우체국 체크카드 2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한 경우 계좌 기준으로 통합 산정하여 실적 확인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4.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한 고객인 경우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이율 적용

※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제외 대상

- 활동계좌, 정리계좌 중 수시입출식 예금을 1개 이상 보유한 고객
- 1년 이내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
- 단, 국고 귀속된 수시입출식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첫 고객에 해당

6. 우체국 우수고객 또는 채널우대는 '『주니어 통장』' 실적 산정 기준과 동일

『베이직 통장』

1. 우체국 우수고객 또는 채널우대는 '『주니어 통장』' 실적 산정 기준과 동일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에 대하여 우체국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다드림 통장 계좌별 예금, 보험 거래 실적에 따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1포인트=1원) 통합 적립
2. 다드림 통장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다드림 카드 발급 시점에 포인트 서비스 제공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하여 제공
3. 다드림 카드 발급 시점 해당월(1일~말일)의 다드림 통장 실적을 체크하여 익월 5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 적립(단, 다드림 카드를 다드림 통장보다 먼저 발급한 경우 다드림 통장 개설 시점 해당월의 다드림 통장 실적을 체크하여 익월 5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 적립)
4. 예금·보험 실적에 따른 포인트는 월 최대 계좌당 1만 포인트 적립

o 포인트 제공 최대한도(월) : 예금 5천 포인트, 보험 5천 포인트

* 우편이용 및 알뜰폰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는 다드림 체크카드에서 별도 제공

o 다계좌인 경우, 각 계좌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월 최대 1만 포인트(예금 5천 포인트, 보험 5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적립

5. 포인트 제공 기준

<table>
<tr><td rowspan="2">예금</td><td>자동이체
이용실적</td><td>
<table>
<tr><th>구 분 (월)</th><th>1좌당 제공 포인트 (월)</th></tr>
<tr><td>5천원 이상 ~ 1만원 미만</td><td>200</td></tr>
<tr><td>1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td><td>400</td></tr>
<tr><td>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td><td>800</td></tr>
<tr><td>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td><td>1,200</td></tr>
<tr><td>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td><td>1,600</td></tr>
<tr><td>50만원 이상</td><td>2,000</td></tr>
</table>
※ 다드림 통장의 공과금[주] 및 우체국 적립식예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주 :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우체국 창구에서 약정한 자동이체)
※ 다계좌일 경우라도 계좌별 합산 월 최대 2,000포인트 초과 불가
</td></tr>
<tr><td>다드림
체크카드
이용실적</td><td>
<table>
<tr><th>구 분 (월)</th><th>1좌당 제공 포인트 (월)</th></tr>
<tr><td>5천원 이상 ~ 10만원 미만</td><td>300</td></tr>
<tr><td>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td><td>600</td></tr>
<tr><td>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td><td>1,200</td></tr>
<tr><td>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td><td>1,800</td></tr>
<tr><td>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td><td>2,400</td></tr>
<tr><td>50만원 이상</td><td>3,000</td></tr>
</table>
※ 다드림 통장을 보유하고 다드림 체크카드를 이용한 실적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 다계좌일 경우라도 계좌별 합산 월 최대 3,000포인트 초과 불가
</td></tr>
<tr><td rowspan="2">보험</td><td>우체국
보험료
자동이체
이용실적</td><td>
<table>
<tr><th>구 분 (월)</th><th>1좌당 제공 포인트 (월)</th></tr>
<tr><td>1천원 이상 ~ 1만원 미만</td><td>200</td></tr>
<tr><td>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td><td>400</td></tr>
<tr><td>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td><td>600</td></tr>
<tr><td>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td><td>800</td></tr>
<tr><td>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td><td>1,000</td></tr>
<tr><td>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td><td>1,200</td></tr>
<tr><td>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td><td>1,600</td></tr>
<tr><td>50만원 이상</td><td>2,000</td></tr>
</table>
※ 다드림 통장에서 우체국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한 실적
※ 다계좌일 경우라도 계좌별 합산 월 최대 2,000포인트 초과 불가
</td></tr>
<tr><td>우체국
연금보험
연금액
수령실적</td><td>
<table>
<tr><th>구 분 (월)</th><th>1좌당 제공 포인트 (월)</th></tr>
<tr><td>1천원 이상 ~ 5만원 미만</td><td>300</td></tr>
<tr><td>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td><td>600</td></tr>
<tr><td>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td><td>900</td></tr>
<tr><td>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td><td>1,200</td></tr>
<tr><td>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td><td>1,500</td></tr>
<tr><td>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td><td>1,800</td></tr>
<tr><td>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td><td>2,100</td></tr>
<tr><td>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td><td>2,700</td></tr>
<tr><td>80만원 이상</td><td>3,000</td></tr>
</table>
※ 다드림 통장으로 우체국 연금보험 연금액을 수령한 실적
※ 다계좌일 경우라도 계좌별 합산 월 최대 3,000포인트 초과 불가
</td></tr>
</table>

② 이 예금에 대하여 월 평잔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월 평잔 50만원 이상 계좌에 각종 수수료 통합 월 10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자금융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와 예금잔액증명 수수료는 월평잔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없이 면제)
2.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적을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잔액을 산정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급여이체 고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고객은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며, 신규 급여이체자는 약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실적에 상관없이 우대서비스 적용)
3. 수수료 면제 서비스 내용

구 분			우대서비스	비고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	영업시간 외	면제	o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통합 월 10회 면제
	타행 계좌이체	영업시간 내	면제	
		영업시간 외	면제	
현금IC카드 / ONE Plus 카드 발급			면제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면제	
전자금융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면제	o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횟수 제한없음
예금잔액증명			면제	

※ 월별 수수료 면제 잔여 횟수는 다음달로 이월 불가하며, 대량이체 거래의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③ 이 예금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다드림패키지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 우대	**제공조건**	다드림통장, 다드림체크카드, 다드림적금 3종 보유 시
	우대서비스	1. 타 금융기관[주]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월 5회 면제 2.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 월 5회 면제
	제공기간	제공조건 해당일 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우대	**제공조건**	다드림통장, 다드림체크카드, 다드림적금 3종 보유 및 다드림체크카드 월 10만원 이상 이용 시
	우대서비스	1. 타 금융기관[주]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월 5회 면제 2.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 월 5회 면제
	제공기간	전달(1일~말일까지) 실적 기준으로 제공조건 해당 시 이번달 1개월간 (1일~말일) 제공

※ 주」 타 금융기관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 은행 제휴 CD기 및 VAN사 CD기 제외)

④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단, 주니어 통장 가입자 제외)

② 이 예금은 전자통장 약정,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9. 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이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입금제한】

① 이 예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공무원연금 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 입금하는 별정우체국연금 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②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공무원연금법 제 32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별정우체국법 제 31조, 동법 시행령 제 43조, 민사집행법 제 195조 제 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2조(이하 "관련 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한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이 예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급여액이 관련 법

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대상금액 까지만 이 예금으로 입금되므로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한다.

④ 관련 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된다.

제8조【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0.1%p,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1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2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당월에 공무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 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는 제외)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
3.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4.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3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0.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보훈급여금 등 수급자이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입금제한】

이 예금의 입금은 국가보훈처에서 입금하는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 정기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제8조【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0.1%p,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1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2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당 월에 보훈급여금 등 수급금이 입금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는 제외)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
3.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4.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3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1. 우체국 생활든든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3%p를 제공한다.

1. 이 예금에 '기초연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5%p
2. 이 예금에 '급여' 또는 '용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5%p
3. 우체국 '라이프+플러스', '행福한', '하이브리드여행' 체크카드 이용 시 : 연 0.3%p

(단위 : 연 %p)

구분	우대조건	우대이율
기초연금 우대	이 예금에 '기초연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0.5
급여 · 용돈 우대	이 예금에 '급여' 또는 '용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0.5
체크카드 우대	우체국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 '행福한 체크카드' 또는 '하이브리드여행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0.3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결산기간 평균잔액 200만원 이하 금액까지는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며, 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②「기초연금 우대」는 전월(1일~말일) 중 이 예금으로 기초연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로 입금내역에 '기초연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적에 해당되며 개인이 입금한 것은 제외한다.

③「급여・용돈 우대」는 전월 중 이 예금으로 '급여' 또는 '용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로 아래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단, 우체국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 예금으로 입금한 것은 제외한다.

1.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또는 '급여이체약정, 후 2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2. 입금내역에 '급여', '월급', '봉급', '용돈', '생활비' 글자가 있고 건별 입금 금액이 20만원 이상

④「체크카드 우대」는 전월 중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우체국 '라이프⁺ 플러스', '행福한 체크카드', '하이브리드여행 체크카드' 중 1가지 이상의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월 넷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결산기간의 평균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아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월 중 이 예금에 기초연금, 급여, 용돈 입금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금융수수료 통합 월 5회 면제 서비스 제공

※ 기초연금, 급여, 용돈 입금 기준은 상기 '우대이율 실적 기준' 과 동일하게 적용

※ 금융수수료 면제 월별 잔여 횟수는 다음 월로 이월되지 않음

2. 수수료 면제 서비스 내용

('19. 9. 2. 현재)

구 분	종 류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통합 월 5회 면제**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영업시간 외)	
	타행이체(영업시간 내·외)	
타 금융기관 주」 자동화기기	출금(영업시간 내·외)	
우체국창구	타행이체	
SMS(월정액형)	입출금통지안내	

※ 주」타 금융기관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 은행 제휴 CD기 및 VAN사 CD기 제외)

② 이 예금에 대하여 아래 실적에 따라 자동이체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월 중 이 예금에서 우체국 보험료 자동이체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시 매월 자동이체 금액의 5%(최대 1천원)를 캐시백하는 서비스

※ 공과금 자동이체는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단, 납부자 자동이체(자행, 타행), 예약이체 제외)

2.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5 영업일 이내 이 예금으로 입금

※ 단, 캐시백 입금 시점에 이 예금이 해지되어 있는 경우 캐시백 입금 불가

③ 이 예금에 대하여 아래 실적에 따라 창구 소포 할인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 예금에 기초연금, 급여, 용돈 입금 중 1가지 이상 실적이 연 1회 이상

있는 경우 '창구 소포 할인쿠폰(3천원)' 연 1회 제공

※ 기초연금, 급여, 용돈 입금의 기준은 상기 '우대이율 실적 기준' 과 동일하게 적용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으로 확인하며 다음 해 1월(5영업일 이내)에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할인쿠폰 발송

2.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소포 이용 시 3,000원 할인 적용

※ 할인쿠폰은 유효기간 내 1회 사용 가능하며 할인쿠폰 분할사용 및 재사용 불가

④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12.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통장은 실명의 개인이며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개인통장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9%p를 제공한다.

1. 이 예금에서 PostPay 월 이용금액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연 0.5%p
2. 우체국 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경우 : 연 0.2%p

3. 이 예금에서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2%p

4.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일 경우 : 연 0.2%p

③ 사업자통장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9%p를 제공한다.

1. PostPay(제로페이 포함) 가맹점 결산기 평잔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연 0.5%p

2.「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을 보유한 경우 : 연 0.2%p

3.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일 경우 : 연 0.2%p

(단위 : 연 %p)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우대조건</th><th>이율</th></tr>
<tr><td rowspan="3">개인
통장</td><td>PostPay
이용우대</td><td>이 예금에서 PostPay 간편결제·간편송금 월 합산 이용금액이 구간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table><tr><th>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th><th>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th><th>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th><th>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th><th>50만원
이상</th></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r></table></td><td>0.1
~
0.5</td></tr>
<tr><td rowspan="2">거래
우대</td><td>우체국 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경우</td><td>0.2</td></tr>
<tr><td>이 예금에서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td><td>0.2</td></tr>
<tr><td>소상공인
우대</td><td>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일 경우</td><td>0.2</td></tr>
<tr><td rowspan="3">사업자
통장</td><td>가맹점
우대</td><td>PostPay(제로페이 포함) 간편결제 가맹점 결제계좌가 우체국 계좌로 약정이 되어 있고, 페이든든 통장 결산기간 평균 잔액이 구간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table><tr><th>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th><th>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h><th>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th><th>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h><th>500만원
이상</th></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r></table></td><td>0.1
~
0.5</td></tr>
<tr><td rowspan="2">소상공인
우대</td><td>우체국「소상공인 정기예금」을 보유한 경우</td><td>0.2</td></tr>
<tr><td>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일 경우</td><td>0.2</td></tr>
</table>

④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개인통장 및 사업자통장의 우대이율 제공 조건 각 항목에 대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적용한다.

「개인통장」

①「PostPay 이용우대」는 전월(1일~말일) 중 이 예금에서 PostPay를 이용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합산 이용금액이 구간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 간편송금 : 전화번호 송금, 계좌송금, 경조송금 / 간편결제 : QR코드 · 바코드 결제

※ 우체국예금 본인 계좌 간 간편송금 제외, 간편결제 취소 시 실적 산정에서 제외

②「거래우대의 적립식 예금 보유」는 전월(1일~말일) 중 '우체국 적립식 예금' 정상 보유주」 실적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 주」적립식 예금 가입취소, 중도해지,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정상보유 실적 제외

* 단, 적립식 예금 만기일이 속한 월은 정상 보유로 실적 산정

③「거래우대의 자동이체 실적」은 전월(1일~말일) 중 이 예금에서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우체국 적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공과금 자동이체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④「소상공인 우대」는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 시 또는 가입 이후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로 확인 될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통장」

⑤「가맹점 우대」는 매 결산일에 PostPay(제로페이 포함) 간편결제 가맹점 결제계좌가 우체국계좌로 약정이 되어 있고, 페이든든통장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주」이 구간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 주」결산기간 중 매일의 잔액의 합에 결산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⑥「소상공인 정기예금 보유」는 전월(1일~말일) 중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정상 보유주」 실적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

※ 주」'소상공인 정기예금'의 가입취소, 중도해지,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정상보유 실적 제외

⑦「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은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 시 또는 가입 이후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확인 될 경우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결산기간의 평균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 가입 시 PostPay 간편송금의 출금계좌 및 간편결제의 결제계좌 목록으로 자동 연계되는 'PostPay 자동연계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단, 이 예금 가입 이전 PostPay 가입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PostPay 간편결제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캐시백(5,000원)을 제공하는 '간편결제 웰컴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다음월 5 영업일 이내 이 예금으로 캐시백

※ 단, 간편결제 취소 시 캐시백은 제공되지 않으며, 캐시백 입금 시점에 이 예금이 해지되어 있는 경우 캐시백 입금 불가

※ 해당 서비스는 2019년 12월말까지 제공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13.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관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은 보관금 회계 및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가입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고 보관금은 개별 법령에 의거 이자가 미발생 할 수 있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4월 말일, 10월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결산기간의 평균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0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보관금 회계 및 종류별로 통장명을 인자할 수 있는 '통장명 관리 서비스' 를 제공한다.

② 이 예금은 보관금 항목별 및 납부자별 자금 관리를 위한 '보관금 항목별 납부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한다.

③ 이 예금은 보관금 입금건별 이자 계산 및 관리를 위한 '입금건별 이자계산 관리 서비스' 를 제공한다.

④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1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국가기관의 예금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14. 우체국 청년미래든든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청년미래든든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이 예금에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 또는 'PostPay 이용 실적' 이 있는 경우 매 결산기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1.0%p를 제공한다.

구분	우대조건
체크카드 우대	이 예금에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PostPay 우대	이 예금에 'PostPay 간편결제 · 간편송금'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결산기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까지는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며,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②「체크카드 우대」는 전월(1일~말일) 중 이 예금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③「PostPay 우대」는 전월(1일~말일) 중 이 예금에서 PostPay 간편결제 또는 간편송금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간편결제 종류 : QR코드, 바코드 결제 / 간편송금 종류 : 전화번호송금, 계좌송금, 경조송금, 기부금송금
※ 단, 간편결제 결제 취소 시 취소한 당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 우체국예금 본인 계좌 간 간편송금 제외

④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고객 연령 만 35세까지 적용한다. 단, 가입 시부터 만 35세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결산기간의 평균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이용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월 중 이 예금에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 또는 PostPay 이용 실적[주] 해당 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

※ 주」체크카드, PostPay 이용 실적 기준은 '우대이율 조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수수료 면제는 계좌 기준이며, 월별 잔여 횟수는 다음 월로 이월되지 않음

2. 수수료 면제 서비스 내용

('19. 9. 2. 현재)

구 분	종 류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면제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영업시간 외)	면제
	타행이체(영업시간 내·외)	면제
타 금융기관 주」 자동화기기	출금(영업시간 내·외)	월 5회 면제

※ 주」타 금융기관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 은행 제휴 CD기 및 VAN사 CD기 제외)

② 이 예금에 대하여 아래 실적에 따라 창구 소포 할인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 예금에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 또는 PostPay 이용 실적이 연 1회 이상 있는 경우 '창구 소포 할인쿠폰(3,000원)' 연 1회 제공

※ 체크카드 이용 또는 PostPay 이용 실적 기준은 '우대이율 조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으로 확인하며 다음 해 1월(5영업일 이내)에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할인쿠폰 발송

※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신규 가입 시 제공조건 상관없이 1회 제공

2.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국내 소포 이용 시 3,000원 할인 적용

※ 할인쿠폰은 유효기간 내 1회 사용 가능하며 할인쿠폰 분할사용 및 재사용 불가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고객 연령 만 35세까지 적용한다. 단, 가입시부터 만 35세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④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5.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이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입금제한】

이 예금의 입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입금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제8조【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0.1%p,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1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2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는 제외)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면제
3.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주」] 면제

※ 주」월 10회 기준 : 매월 1일 ~ 말일 기준

4.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3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6.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자(서류 예시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소지자
3.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훈련수강확인증' 소지자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 결산기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0.8%p를 제공한다.

1. 전월에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4%p
2. 전월에 「해외 자동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2%p
3. 전월에 「급여이체」, 「우체국 적금으로 자동이체」, 「결산기간 동안 평균잔액 50만원 이상」 실적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연 0.2%p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결산기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까지는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며,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②「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실적」 우대는 전월(1일~말일)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의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단, 체크카드 승인 ·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 (신용결제 제외)

③「해외 자동송금 서비스 이용실적」 우대는 전월(1일~말일)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 해외 자동송금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④「급여이체 실적」 우대는 전월(1일~말일)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에서 정한 급여성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⑤「우체국 적금 자동이체 실적」 우대는 전월(1일~말일)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 적립식 예금으로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⑥「결산기간 동안 평균잔액 50만원 이상 실적」 우대는 결산기간(전월 결산일 다음날~당월 결산일) 동안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결산기간의 평균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에서 전월 동안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 해당하는 경우,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
3.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단,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금액만 실적으로 인정 (신용결제 제외)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2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이 예금은 양도, 승계,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17. 우체국 취업이룸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취업이룸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이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입금제한】

이 예금의 입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입금하는 구직촉진수당* 등 만 입금이 가능하며,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

제8조【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0.1%p,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1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2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인터넷·폰·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는 제외)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면제
3.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주」] 면제

※ 주」 월 10회 기준 : 매월 1일 ~ 말일 기준

4.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3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1. 챔피언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챔피언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법인 등 제한이 없다.

②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경우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②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 및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⑤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 월, 일단위로 정할 수 있다. (단, 월단위 가입은 가입기간이 2월 이상이어야 하며, 1년 확정형 가입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장전결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2. 인터넷뱅킹 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이율적용방식은 확정금리형, 1년 확정형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확정금리형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1년 확정형은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의 1년 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매 1년간 적용한다. (단,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응당일로 하며,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응당일로 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단, 1년 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연복리로 이자 계산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

창구 가입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만기일에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

창구 가입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를 통해 이자를 지급 ※ 단, 월 이자 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직전 영업일에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모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④ 이 예금의 중도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만기일 전 2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월단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월이자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2. 중도이자지급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일괄지급 하여야하며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의 일부지급은 불가능하다.
3. 중도이자지급이 있었던 경우에 만기해지 시 지급이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만기일시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분할해지】

① 가입기간(재예치기간) 동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가입(재예치) 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분할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자동 재예치】

① 이 예금은 만기일에 원리금(또는 원금)을 2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 서비스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월・연단위로 가입, '확정금리형' 이율 적용방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 재예치 금액은 '원금' 또는 '원금 및 이자' 중 선택 가능하며 원금만 재예치하는 경우 이자는 본인명의 수시입출식 예금(모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인 경우 '원금'만 재예치 가능

※ 압류, 사고신고,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자동 재예치가 불가함

3. 적용이율은 자동 재예치 시점의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우수고객우대금리, 본부승인금리 지급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2. 이웃사랑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이웃사랑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1인 1계좌)

① 사회 소외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② 사랑 나눔 실천자

1.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2.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③ 농어촌 지역 주민 :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하며,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5%p 적용한다.

1. 사랑금리 :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3%p 제공
2. 보너스금리 :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2%p 제공

(연, %p)

우대이율 제공조건		우대이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사랑금리 (최고 연 0.3%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 가정 고객	0.3	0.2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 실천 고객	0.3	0.2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0.2	0.1
보너스금리 (최고 연 0.2%p)	소외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을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매월 수령 ※ 정부지원금 : 3개월 이내 수급자(소년소녀가정)의 생계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양육비	0.1	
	우체국 장애인복지체크카드 이용고객	0.1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전결우대이율 적용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사랑금리」 해당 고객은 각 항목별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소외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은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의 생계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조손 가정 포함)의 아동양육비에 한하며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통장 및 전산 조회(최근 3개월 거래내역 확인)로 매월 입금됨을 확인하되, 입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서류로 확인한다.
3. 「우체국 장애인복지체크카드 이용고객」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월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3. e-Postbank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e-Postbank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③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 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③ 인터넷뱅킹 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④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3%p를 제공한다.

1. 이 예금 가입기간 중 온라인 거치·적립식 예금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연 0.1%p
2. 예금 가입당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인 경우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

⑤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온라인 거치·적립식 예금상품 가입은 이 예금 가입기간 중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거치·적립식 예금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 단, 온라인 거치·적립식 예금상품을 가입 취소 또는 중도해지 한 경우 제외
2. 자동이체 약정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인 경우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 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챔피언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챔피언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2040$^{+\alpha}$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2040$^{+\alpha}$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으로 한다.(금융기관 제외)

②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경우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③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또는 인터넷뱅킹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④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3%p를 제공한다.

1. 급여이체 시 연 0.1%p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실적 해당 시 (개인, 단체 20만원 / 개인사업자 30만원 / 법인 100만원) 연 0.1%p
4. 2040$^{+\alpha}$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시 연 0.1%p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유지 시(개인 100만원 /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만원) 연 0.1%p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인 경우 연 0.1%p

※ 우편 우수고객 우대는 우체국창구 가입 시 적용

⑤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급여이체는 신규 가입 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해지 시점까지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 실적(개인, 단체 20만원 / 개인사업자 30만원 / 법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4. 2040$^{+\alpha}$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은 동일자에 2040$^{+\alpha}$자유적금을 만기해지하고 2040$^{+\alpha}$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실적은 신규 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 가입일 전일까지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실적(개인 100만원 /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수고객인 경우

※ 우편 우수고객 우대는 우체국창구 가입 시 적용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1.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의 우대이율 항목은 우대이율 적용여부가 만기해지 시점에 결정되므로,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 해지시 해당 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

창구 가입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

창구 가입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를 통해 이자를 지급 ※ 단, 월 이자 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직전 영업일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모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예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유학, 결혼, 이민,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학 : 입학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2. 결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3.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4.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4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5. 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계좌 개설시 명의인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며,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 전문(電文)을 통해 가입 · 해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의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우체국이 지정한 취급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또는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10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특별중도해지】

이 예금은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신규 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예치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 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하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6.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⑤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⑦ 수탁자의 사임

⑧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 또는 자산운용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

⑨ 계열사내 전직,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우체국 내 계약이전

⑩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제12조【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근로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시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산정되지 않으며 제한이 없다.

1.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② 자동재예치 시 분할 해지 횟수는 새로 산정한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또는 자동재예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양도,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은 예금주와 우체국간의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을 통한 전문(電文)으로 거래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③ 이 예금은 만기 시 최초 계약과 동일 기간으로 원리금이 자동재예치되며, 매 재예치 시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별 이율을 적용된다.

④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이 예금주에게 통지할 사항은 해당 전문으로 대신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6. 우체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자격을 갖춘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ISA 취급 금융기관')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계좌 개설시 명의인은 ISA 취급 금융기관으로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중계망 전문(電文)을 통해 가입 · 해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의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우체국이 지정한 모계좌 개설 우체국에서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ISA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10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특별중도해지】

① 이 예금은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ISA 정기예금 경과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후 해지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5. 신탁(일임)보수 취득

②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이때 약정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ISA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 1항 제 5호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kr)에 게시한 약정이율을 특별중도해지이율로 한다.

1.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3개월제 약정이율
2. 경과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6개월제 약정이율
3. 경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율
4. 경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2년제 약정이율

제12조【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별로 가입기간 중(또는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②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신탁(일임)보수 취득의 사유로 분할해지 할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일에는 분할해지 불가하다.

제13조【자동재예치】

① 이 예금은 만기일에 최초 계약과 동일한 가입기간으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액을 자동 재예치하며, 만기일이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재예치 신규일로 한다.

② 자동재예치 시 적용이율은 매 재예치 시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ISA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된다.

③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이 예금주에게 통지할 사항은 해당 전문으로 대신한다.

제14조【기타】

①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정지, 상계 및 양도, 양수가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은 예금주와 우체국간의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중계망 전문(電文)을 통해 거래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③ 이 예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7.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하며,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③ 우체국장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④ 상품우대이율 :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5%p 적용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일 경우 연 0.3%p
2. 신규 가입일 현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경우 연 0.1%p
3. 우체국 수시입출식예금 평잔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연, %p)
가입자우대	o 소상공인 · 소기업 대표자	0.3
거래우대	o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우대 - 신규 가입일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0.1
	o 수시입출식예금 평잔 우대 - 이 예금 가입기간* 동안 우체국 수시입출식예금 평잔 200만원 이상 시 * 신규 가입월 1일 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0.1

⑤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가입자 우대」는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자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일 경우
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우대」는 신규 가입일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경우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 중앙회, 은행, 우체국을 통해 가입한 경우 모두 포함이며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적용

3. 「수시입출식예금 평잔 우대」는 이 예금 신규 가입월 1일 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우체국 수시입출식예금 평잔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수시입출식예금 평잔 기준

⇒ 평잔 = 수시입출식예금 월적수의 합 / 유지기간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이 신상품 가입고객의 고객번호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잔 실적 적용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1.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수시입출식예금 평잔 우대' 항목은 우대이율 적용 여부가 만기해지 시점에 결정되므로,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

해당 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월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예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결혼, 출산, 입원, 이민 또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2.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3.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4.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5.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6. 폐업 :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4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3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8.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상품유형】

① 이 예금은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2종류가 있다.

② 「금리연동형」은 회전주기에 따라 「1개월 연동형」, 「3개월 연동형」, 「6개월 연동형」3종류가 있다.

제8조【회전주기】

① 이 예금에서 '회전주기'는 금리연동형을 선택하는 경우 가입기간 이내에서 이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 기간을 말한다.

② 이 예금의 회전주기는 매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며, 신규 가입 시 선택한 회전주기는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또는 매 회전주기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4%p 적용한다.

1. 우편 계약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인 경우 연 0.2%p
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균잔액 실적 해당 시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해당 시 연 0.1%p
4.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연 0.1%p

(연, %p)

우대이율 제공조건		우대이율
우편우대	우편 계약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우대 ※ 우체국창구를 통한 신규 가입 시 적용	0.2
거래우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균잔액 실적 우대 (개인 10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법인·단체 1,000만원 이상)	0.1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우대 (개인·단체 2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60만원 이상 / 법인 200만원 이상)	0.1
고객우대	신규 가입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우대	0.1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전결우대이율 또는 인터넷뱅킹우대이율 적용

④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10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금리연동형」의 적용이율은 매 회전주기일 현재 회전주기별 기본이율에 회전주기 동안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매 회전주기 마다 적용한다.

② 이 예금「금리확정형」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우편 우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한 신규 가입 시 가입자가 우편 계약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인 경우

   ※ 우편 계약고객 우대이율은 우체국창구에서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용하며 신규 가입일의 전영업일 18시 현재 유효한 계약이어야 함

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균잔액 실적 우대」는 실적확인 기간* 동안

수시입출식 예금 평잔 실적(개인 10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적확인 기간

- (금리연동형) 매 회전주기일의 전전월 말 기준 해당월 1개월 평균잔액
- (금리확정형) 신규 가입일의 다음월 1일부터 만기일의 전전월 말일까지의 평균잔액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고객의 고객번호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잔 실적 적용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우대」는 실적확인 기간* 동안 체크카드 이용실적(개인, 단체 2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60만원 이상 / 법인 2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적확인 기간

- (금리연동형) 매 회전주기일의 전전월 말 기준 해당월 1개월 이용실적
- (금리확정형) 신규 가입일의 다음월 1일부터 만기일의 전전월 말일까지의 월평균 이용실적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 우체국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고객의 고객번호 기준으로 통합 산정

4. 「고객 우대」는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제11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2조【이자지급방식】

① 「금리연동형」의 이자지급방식은 회전주기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금리확정형」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1. 「금리연동형」회전주기지급식의 이자는 고객이 지정한 회전주기(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단리로 셈하여 지급한다.
2. 「금리연동형」만기일시지급식의 이자는 고객이 지정한 회전주기(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복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3. 「금리확정형」만기일시지급식의 이자는 단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한 신규 가입 시」 회전주기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 지급이 가능하며,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KOR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bank.kr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회전주기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며,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한 신규 가입 시」 회전주기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모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 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3조【부가서비스】

① 이 예금은 가입기간 동안 가입 고객의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인감)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4조【중도해지】

①「금리연동형」의 경우 회전주기 경과 전에 중도 해지할 때는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금리연동형」의 경우 회전주기 경과 후에 중도 해지할 때는 경과된 회전주기에 대해서는 약정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을 적용하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회전주기일 현재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지율을 적용한다.

③「금리확정형」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6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우정사업본부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이 예금의 신규 가입일 현재 중도해지 적용 방식을 적용한다.

제17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8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5%p를 제공한다.

1. 우체국 온라인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 우대 : 연 0.3%p
2. 급여이체 고객 우대 : 연 0.2%p
3. 추천번호 우대(각 연 0.1%p 씩 최고 연 0.2%p) : 연 0.2%p
4.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함께 가입 우대 : 연 0.1%p
5. 만기 자동재예치 우대 : 연 0.1%p

(단위 : 연 %p)

우대이율 제공조건	우대이율
· 우체국 온라인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 우대 (*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정기예금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0.3
· 급여이체 고객 우대	0.2
· 추천번호 우대(각 0.1% 씩 최고 0.2%)	0.2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함께 가입 우대	0.1
· 만기 자동재예치 우대	0.1

※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인터넷(스마트)뱅킹 우대이율 적용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온라인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우체국 온라인 거치식 예금*의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가입 시점에 최초 가입기간 동안 적용

※ 온라인 거치식 예금 :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거치식 예금

2.「급여이체 고객」은 신규 가입(재예치) 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재예치) 시점에 적용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3.「추천번호 우대」는 신규 가입 시 타인의 추천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할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연 0.1%p씩, 최고 연 0.2%p 적용

※ 예금 가입 시 생성된 본인의 추천번호는 최종 만기일 이내에서 타인 2명까지 사용 가능

4.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함께 가입 우대」는 신규 가입일(재예치일)에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을 보유하고, 이 예금 만기 시 까지 해당 적금을 유지 하거나 만기 해지한 경우 적용

5.「만기 자동재예치 우대」는 자동재예치 시점에 재예치 기간 동안 적용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에 우체국창구,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제11조【부가서비스】

① 이 예금은 가입기간(재예치 기간) 동안 2회까지 본인의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통해 추가 입금이 가능한「보너스 입금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부터 만기일 1개월 이전 까지 추가 입금 가능하며, 추가 입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추가 입금 이후 총액이 최고 가입금액(5,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2. 추가 입금일 당시 기간별[주]」정기예금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우대이율은 가입시(재예치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주」추가 입금일부터 만기일까지 예치일수

3.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신규 가입시 설정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내에서 추가 입금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가입기간(재예치 기간) 동안 2회까지(만기해지 포함 3회) 분할출금이 가능한 「비상금출금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분할 출금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가입(재예치)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2.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중도해지 적용 방식을 적용한다.

※ 보너스 입금이 있는 경우 후입선출 방식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가입시 설정한 한도로 유지됨

③ 이 예금은 만기일에 원리금(또는 원금)을 2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하는「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재예치 금액은 '원금' 또는 '원금 및 이자' 중 선택 가능하며 원금만 재예치하는 경우 이자는 연결된 수시입출식 예금(모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인 경우 '원금'만 재예치 가능
   ※ 압류, 사고신고,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자동 재예치가 불가함
2. 적용이율은 자동 재예치 시점의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④ 이 예금은 만기일에 연결된 수시입출식 예금(모계좌)로 만기 해지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압류, 사고신고,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가 불가함

⑤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2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양도, 승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10.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5%p를 제공한다.

1. 만 50세 이상 고객 : 연 0.1%p
2. 우체국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 : 연 0.1%p
3.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연금 또는 급여이체 실적 : 연 0.2%p
4.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월평잔 실적 : 연 0.1%p
5.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 : 연 0.1%p

6. 만기 자동재예치 : 연 0.1%p

(단위 : 연 %p)

우대이율 제공조건	우대이율
· 가입 시 만 50세 이상 고객 우대	0.1
· 우체국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 우대 (* 최근 1년 이내 정기예금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0.1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연금 또는 급여이체 실적 우대	0.2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 우대	0.1
· 우체국 체크카드 60만원 이상 이용 우대	0.1
· 만기 자동재예치 우대	0.1

※ 우체국장우대이율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우대이율 적용

⑤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만 50세 이상 고객 우대」는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경우

2.「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 우대」는 신규 가입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우체국 거치식 예금의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로 가입 시점에 최초 가입기간 동안 적용

3.「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연금 또는 급여이체 실적 우대」는 신규일(재예치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연금 또는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금 실적은 입금내역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초(노령)연금, 우체국연금' 으로 전산 확인 (개인이 입금한 것은 제외)

※ 급여이체 실적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의 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기준을 준용함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4. 「수시입출식 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 우대」 는 신규 가입일(재예치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이 1회 이상인 경우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고객의 고객번호 기준으로 합산하여 월평잔 실적 적용

5. 「우체국 체크카드 60만원 이상 이용 우대」는 신규일(재예치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총 60만원 이상인 경우

※ 우체국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고객의 고객번호 기준으로 통합 산정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6. 「만기 자동재예치 우대」는 자동재예치 시점에 재예치 기간 동안 적용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금융서비스】

① 이 예금은 가입기간(재예치 기간) 동안 2회까지 본인의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통해 추가 입금이 가능한「추가입금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부터 만기일 1개월 이전 까지 추가 입금 가능하며,

추가 입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추가 입금일 당시 기간별[주] 정기예금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우대이율은 가입시(재예치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주」 추가 입금일부터 만기일까지 예치일수

3.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신규 가입시 설정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내에서 추가 입금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가입기간(재예치 기간) 동안 2회까지(만기해지 포함 3회) 분할출금이 가능한「분할해지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분할 출금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가입(재예치)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2.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중도해지 적용 방식을 적용한다.

※ 추가 입금이 있는 경우 후입선출 방식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가입시 설정한 한도로 유지됨

③ 이 예금은 만기일에 원리금(또는 원금)을 1년 단위로 2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하는「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재예치 금액은 '원금' 또는 '원금 및 이자' 중 선택 가능하며 원금만 재예치하는 경우 이자는 연결된 수시입출식 예금(모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인 경우 '원금'만 재예치 가능

※ 압류, 사고신고,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자동 재예치가 불가함

2. 적용이율은 자동 재예치 시점의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부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또는 가입기간 동안 「세무상담 서비스」또는「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1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예금주 본인이 신청한 경우 「무배당 우체국예금 제휴보험 1종(휴일재해보장형)」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보험서비스 제공대상은 이 예금 가입고객이 만 19세 이상이며 보험가입에 동의하였을 경우에 제공된다.

2.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이 예금 최초 1회 제공하며, 이 예금 해지 시에도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 단, 이 예금을 가입일 당일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은 청약철회 됨

3. 보험담보위험, 보험금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3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양도, 승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11. 우체국 e-공동구매 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e-공동구매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인터넷뱅킹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기간별 이율 적용
2. 공동구매우대이율 : 판매기간 종료일까지 판매된 금액에 따라 차등이율 적용

(단위 : 연 %p, 세전)

구분	공동구매우대이율
2,000억 미만	0.3
2,000억 이상 ~ 5,000억 미만	0.4
5,000억 달성	0.5

※ 판매금액별 확정이율은 판매기간 종료일 다음 날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판매기간 종료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인터넷뱅킹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2. 「공동구매우대이율」은 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에 따라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5,000억원이며 판매기간은 2021. 12. 14. ~ 2022. 2. 28. 까지로 한다.

※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1. 2040$^{+\alpha}$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2040$^{+\alpha}$자유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으로 한다.

②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경우 가입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금융기관 제외)에 한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② '인터넷/스마트 2040$^{+\alpha}$자유적금'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 및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인터넷/스마트 2040$^{+\alpha}$자유적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④ '인터넷/스마트 2040$^{+\alpha}$자유적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인터넷/스마트 2040$^{+\alpha}$자유적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 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1인당 매 분기 5천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3%p를 제공한다.
1. 급여이체 시 연 0.1%p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실적 해당 시 (개인, 단체 20만원 / 개인사업자 30만원 / 법인 100만원) 연 0.1%p
4. 월 50만원 이상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이체 시 연 0.1%p
5. 우체국창구에서 가입시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인 경우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연 0.1%p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급여이체는 신규 가입 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해지 시점까지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 실적(개인, 단체 20만원 / 개인사업자 30만원 / 법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4. 적금 가입 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월 5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만기까지 납입횟수의 80% 이상을 자동이체 한 경우 만기해지 시점에 우대이율 제공
5.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은 우체국창구에서 가입 시 신규 가입일 현재 우수고객이거나 우체국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창구 가입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우정사업본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유학, 결혼, 이민,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학 : 입학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2. 결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3.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4.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4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2.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패키지별로 구분한다.

※ 패키지별 1인 1계좌 (최대 1인 2계좌까지 가능)

가입구분	새출발 희망	새출발 행복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기증자, 다자녀가정, 부모봉양자,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개인신용평점 상위 92% 초과 개인, 협동조합종사자, 소상공인

② 이 예금의 가입대상에 대한 정의 및 해당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다.

새출발 희망		확인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근로장려금수급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세목:근로장려금)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수급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결혼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원 및 혼인관계증명서

새출발 행복		확인서류
헌혈자	좌 동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 * 헌혈 횟수 5회 이상
입양자	좌 동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장기·골수기증자	좌 동	장기·골수기증 희망등록증 등
다자녀가정	가입일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수가 3명 이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봉양자	가입일 현재 만 20세 이상 가입자가 부모 봉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좌 동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신용평점 상위 92% 초과 개인	좌 동	실명확인증표 및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협동조합종사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납입증명서 또는 조합원증명서
소상공인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하며,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납입 회차당 월 1만원 이상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산하여 희망패키지는 최고 연 2.2%p, 행복패키지는 최고 연 0.5%p를 적용한다.

1. 신규 가입일 현재 희망 또는 행복패키지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 연 0.2%p
2. 만기일 당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실적 금액별 차등 적용하며, 희망패키지는 최고 연 2.0%p, 행복패키지는 최고 연 0.3%p 제공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연, %p)	
			희망	행복
가입자 우대	가입대상에 해당될 경우		0.2	
자동이체 거래 우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	0.1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5	0.2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0	0.3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가입자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적용한다.

③ 자동이체거래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한다.

1. 만기일 당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된 횟수가 계약월수의 2/3 이상
2. 납입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월 평균 금액이 금액대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 예1) 새출발 희망패키지, 가입기간 12개월 - 총 12회차 납입의 경우 → 8회차(12X2/3)이상이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통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에 해당하며

예2) 1회차~4회차까지 15만원, 5회차~8회차까지는 25만원을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 월 평균 금액은 20만원 (15x4+ 25x4)/8 이므로 가입자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2%p 우대금리 제공

※ 단, 계약월수의 2/3 개월수가 소수점까지 나올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계약기간이 8개월, 계약월수의 2/3 = 5.3 개월일 때 5개월로 산정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3.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6.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KOR 우정사업본부
www.kpicknaepostgo.kr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의 새출발 희망패키지 판매한도는 50,000좌로 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3. 우체국 다드림(多Dream) 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0%p를 제공한다.

1. 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 연 0.1%p
2. 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 연 0.1%p
3. 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 연 0.2%p

4. 급여이체, 연금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 : 연 0.4%p
5. 다드림 통장 (월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 (월 10만원 이상) 이용실적 해당 시 : 연 0.2%p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연, %p)
고객 우대	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0.1
	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0.1
장기 우대	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0.2
주거래 우대	급여이체, 연금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	0.4
파트너 우대	다드림 통장(월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월 10만원 이상) 이용실적 해당 시	0.2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고객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장기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예금을 최초로 계좌 개설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단, 예금 가입 취소는 장기거래 고객 산정 기준에서 제외

2.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③ 장기 우대이율은 다드림 적금을 3년으로 가입을 하고 만기해지 할 경우 적용한다.

④ 주거래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주1」] 동안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매월 2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1년제 : 6개월, 2년제 : 12개월, 3년제 : 18개월)[주2」]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 주1」실적 인정기간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

(예시) '15.12.10일 1년 만기 다드림 적금 가입 시 실적인정기간 : '15.12월부터 ~ '16.10월까지

※ 주2」실적 충족 개월 수 산정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1. 급여이체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2. 연금수령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글자가 있는 경우
3. 공과금 자동이체는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납부자 자동이체, 예약이체 제외)
4. 적금 자동이체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다드림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⑤ 파트너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주1」] 동안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1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3개월 이상[주2」] 인 경우 적용한다.

1. 다드림 통장의 월 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드림 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 주1」실적 인정기간은 신규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

※ 주2」다드림 통장 및 다드림 체크카드의 실적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3.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6.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4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다드림 패키지 우대서비스」에 따라 다드림 통장에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4. 우체국 아이LOVE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아이LOVE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예치 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약정이 가능하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월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0%p를 제공한다.

1. 대표가족의 스마트뱅킹 이용,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예·적금 신규 가입 실적에 따라 각각 연 0.1%p씩, 최고 연 0.3%p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한 단체 신규 가입 시 : 연 0.2%p

3. ‘우체국예금-초등학교 협력사업’의 초등학교 학생 신규 가입 시 : 연 0.2%p
4.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시 : 연 0.1%p
5. 자동 재예치 시 직전 예치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6. 신규 가입 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가정, 소년소녀가정, 새터민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다자녀 가정 인 경우 : 연 0.4%p

(단위 : 연 %p)

구분	제공조건	우대이율
가족우대	대표가족*의 스마트뱅킹 이용	0.1
	대표가족*의 우체국체크카드 이용	0.1
	대표가족*의 예・적금 신규 가입	0.1
단체우대	학교(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한 단체 신규 가입	0.2
미래고객 우대	‘우체국예금-초등학교 협력사업’의 초등학교 학생 신규 가입	0.2
자동이체 우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0.1
재예치 우대	자동 재예치 시 직전 예치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재예치 시점에 적용	0.1
나눔우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가정, 소년소녀가정, 새터민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다자녀 가정	0.4

* 대표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상 예금주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 대표가족으로 등록된 1인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가족우대」는 실적 산정기간[주1] 동안 대표가족[주2] 의 실적으로 확인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실적 산정기간 경과 이후 전산으로 확인하여 각각 연 0.1%p씩 적용한다.

※ 주1 : 이 적금 신규 가입(재예치) 월의 1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 주2 : 대표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예금주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 우체국에 대표가족으로 등록된 1인

1. 「대표가족의 스마트뱅킹 이용」은 이 적금 실적 산정기간 동안 ‘대표가족’의 우체국 스마트뱅킹 이체 거래 총 15회 이상인 경우

※ 우체국 스마트뱅킹으로 통한 이체 거래만 해당되며 예약이체, 자동이체는 제외

2. 「대표가족의 체크카드 이용」은 이 적금 실적 산정기간 동안 ‘대표가족’ 의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총 60만원 이상인 경우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 다수의 체크카드 보유 시 이용 실적 합산

3. 「대표가족의 예·적금 신규 가입」은 이 적금 실적 산정기간 동안 '대표가족' 이 우체국 거치식 예금 또는 적립식 예금을 신규 가입한 경우

※ 거치식 또는 적립식 예금을 가입 취소 또는 중도해지 한 경우 제외

③ 「단체우대」는 학교(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 단체 가입한 경우 신규 가입 시점에 적용한다.

④ 「미래고객 우대」는 '우체국예금-초등학교 협력사업'의 초등학교 학생이 신규 가입한 경우 가입 시점에 적용한다.

⑤ 「자동이체 우대」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만기까지 납입 횟수가 80% 이상을 자동이체한 경우 적용한다.

⑥ 「재예치 우대」는 자동 재예치 약정을 하고 재예치 시점에 직전 예치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해당 재예치 기간 동안 적용한다.

⑦ 「나눔우대」는 신규 가입일 현재 나눔우대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가입 시점에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무료 보험 서비스】

① 이 예금 신규 가입 시 우체국보험의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2종(주니어보장형)」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고객 당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이 적금 해지 시 보험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③ 보험담보위험, 보험금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자동 재예치 서비스】

① 이 예금은 최초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1년, 2년, 3년으로 자동 재예치 약정이 가능하다.

② 최초 가입기간 만기 시 원리금(세금공제 후)이 재예치 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되며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18년(만 19세 미만까지) 자동 재예치 된다.

③ 자동 재예치 시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은 매 재예치 시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이율을 적용한다.

④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3조【자투리저축 서비스】

①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자투리 금액(1만원 미만 잔액)을 매월 이 적금으로 자동 저축하는 「자투리저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자투리저축 서비스」는 약정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약정기간은 약정일 다음 월 말일부터 이 적금 만기일 전월의 말일까지이며 약정기간 동안 변경 또는 해지 가능하다.

※ 「자투리저축 서비스」 약정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1계좌당 1약정으로 가능

※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자투리저축 약정기간은 자투리저축 약정일 다음 월 말일부터 최종 만기일 전월의 말일까지임

③「자투리저축 서비스」약정으로 저축되는 금액은 약정 시 지정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매월 말일(23시) 기준 1만원 미만 잔액(1원~9,999원)이다.

1.「자투리저축 서비스」로 저축되는 금액은 적금 월 저축한도에서 제외된다.

2. 매월 말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전 영업일에 자투리저축 서비스가 실행되며 자동이체일과 같은 날인 경우 자동이체가 우선 실행된다.

④「자투리저축 서비스」약정 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자투리저축 실행 전에 자투리저축이 약정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주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4조【분할해지】

① 전체 가입기간(신규 가입일부터 최종 만기일 까지) 동안 적금 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최종 만기해지 포함 3회)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분할해지 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동 재예치) 시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자동 재예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6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7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8조【기타】

이 예금은 양도, 승계,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5.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4%p를 제공한다.

1. 자녀수 해당 시 : 1명 연 0.2%p / 2명 연 0.3%p / 3명 이상 연 0.4%p
2. 일하는 기혼 여성일 경우 : 연 0.2%p
3.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정의 여성, 여성 장애인일 경우 : 연 0.4%p
4. 우체국「아이LOVE적금」보유 시 연 0.1%p 또는 「아이LOVE적금」의 '미래고객 우대이율' 해당 시 0.3%p
5.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해당 시 : 연 0.1%p

6. 이 예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연 0.2%p

(단위 : 연 %p)

구 분		제공조건	우대이율
자녀 우대		자녀수에 따라 우대 (1명 : 0.2 / 2명 : 0.3 / 3명 이상 : 0.4)	0.2 ~ 0.4
여성 우대	일하는 기혼 여성	경제활동을 하는 혼인 중인 여성	0.2
	나눔 우대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정의 여성, 여성 장애인	0.4
거래 우대	우체국 적금 가입 (① 또는 ②)	① 신규일 기준 '우체국 아이LOVE적금 가입	0.1
		② 신규일 기준 '미래고객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우체국 아이LOVE적금' 가입	0.3
	체크카드 이용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0.1
	적금 자동이체 실적	적금 자동이체 실적	0.2

※ 계약기간 (가입일~만기일) 중 결혼, 출산 시에도 (자녀우대, 일하는 기혼 여성) 우대금리 제공

※ 여성우대 (일하는 기혼 여성, 나눔 우대)는 여성 고객에 한하여 제공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자녀 우대」는 계약기간(가입일~만기일) 중 예금주의 총 자녀수(태아포함)(1명 : 연 0.2%p, 2명 : 연 0.3%p, 3명 이상 : 연 0.4%p)에 따라 가입시점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확인하여 적용한다.

③「일하는 기혼 여성 우대」는 계약기간(가입일~만기일) 중 예금주가 혼인 중인 여성이면서 경제활동 사실이 있는 경우로 가입시점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적용한다.

④「나눔 우대」는 신규 가입일 기준 예금주가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정의 여성, 여성 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⑤「우체국 적금 가입 우대」는 신규 가입일 기준 예금주 본인, 자녀, 손자·손녀 중 우체국「아이LOVE적금」을 보유한 경우 또는「아이LOVE적금」우대금리 항목에서 '미래고객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⑥「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우대」는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총 6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⑦「적금 자동이체 실적 우대」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계약기간(가입일~만기일) 중 자동이체 납입 횟수가 80%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부가서비스】

①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우체국쇼핑 할인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쿠폰혜택	o 우체국쇼핑 이용 시 3,000원 할인서비스 제공
제공시기	o 이 예금 가입일 다음월 5영업일 이내에 발송
제공조건	o 이 적금 가입월에 자동이체 약정(월 30만원 이상)을 하고 쿠폰 제공일까지 적금 및 자동이체 약정 유지고객 대상
제공방법	o 고객정보의 휴대폰 번호로 할인쿠폰 안내 메시지 (쿠폰번호) 발송
사용방법	o 우체국쇼핑 (http://mall.epost.go.kr) → 할인쿠폰 사용등록 → 할인 쿠폰 번호 입력 (등록)
등록기한 사용기한	o 등록기한 : 쿠폰 발송월 말일까지 o 사용기한 : 쿠폰 등록일 ~ 등록일 이후 3개월 이내
유의사항	o 우체국쇼핑 이용 시 인터넷 우체국 회원가입 필수 o 쿠폰은 1회 등록, 사용 가능하며 쿠폰 분할사용 및 재사용 불가 o 이 적금 중도해지 후 재 가입 시 부가서비스 제공 불가

③ 부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우체국 및 우체국과 제휴한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4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3.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6.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5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6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7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6.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한다.

1.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②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①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 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로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최대 가입기간은 24개월로 함(만기해지 후 재가입 불가)

③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단,「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하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5%p를 제공한다.

1. 「적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될 경우 : 연 0.2%p
2.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해당될 경우 : 연 0.2%p
3. 「우체국예금 첫 거래 고객」일 경우 : 연 0.1%p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적금 자동이체 실적」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1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자동이체 납입 횟수가 계약기간(가입일~만기일) 개월수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③「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월평균 5만원 (총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④「우체국예금 첫 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예금을 처음 거래하는 경우로 가입 시점에 전산으로 확인하여 자동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부가서비스】

① 이 예금 신규 가입 시 우체국보험의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1종(휴일재해보장형)」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이 예금 최초 1회 제공하며, 이 예금 해지 시에도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 단, 이 예금을 가입일 당일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은 청약철회 됨

2. 보험담보위험, 보험금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이 예금 가입일 당시 기준으로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3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우체국쇼핑 할인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주요내용
쿠폰혜택	o 우체국쇼핑 이용 시 3,000원 할인서비스 제공
제공시기	o 이 예금 가입일 다음월 5영업일 이내에 발송
제공조건	o 이 예금 가입월에 자동이체 약정(월 3만원 이상)을 하고 쿠폰 제공일까지 적금 및 자동이체 약정 유지고객 대상
제공방법	o 고객정보의 휴대폰 번호로 할인쿠폰 안내 메시지 (쿠폰번호) 발송
사용방법	o 우체국쇼핑 (http://mall.epost.go.kr) → 할인쿠폰 사용등록 → 할인 쿠폰 번호 입력 (등록)
등록기한 **사용기한**	o 등록기한 : 쿠폰 발송일 ~ 발송일 이후 6개월 이내 o 사용기한 : 쿠폰 등록일 ~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
유의사항	o 우체국쇼핑 이용 시 인터넷 우체국 회원가입 필수 o 쿠폰은 1회 등록, 사용 가능하며 쿠폰 분할사용 및 재사용 불가 o 이 예금 중도해지 후 재 가입 시 부가서비스 제공 불가

③ 부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우체국 및 우체국과 제휴한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4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의병전역,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의병전역 : 병적증명서(전역사유 '의병')
3. 입원 : 입원 확인서(3개월 이상) 또는 진단서

제15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6조【과세구분】

①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제17조【1% 이자지원금 지급】

① '1% 이자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금 만기해지
2.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의 일치

※ 단, 적금 만기일 전(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

3. 만기 해지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기재된 확인서 원본 제출

※ 확인서 :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1

③ 만기 해지 시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 우체국에 재청구할 수 없다.

④ '1%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⑤ '1% 이자지원금'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8조【제한사항】

① 이 예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 및 추가 납입, 1% 이자지원금,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19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 분할해지, 자동만기해지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자율 적용 가입구간 변경에 따라 제7조 1항의 이자율 조견표(별지2) 변경됨.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7. 우체국 가치모아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8%p를 제공한다.

1. 적금 자동이체 실적을 달성한 인원수에 따라 : 연 0.1 ~ 0.3%p
2. 동일 모임추천번호 가입 인원수 달성 : 연 0.2%p
3. 목표저축액 설정 및 달성 : 연 0.1 ~ 0.2%p
4. 우체국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 연 0.1%p

5. 우체국 여행특화 체크카드 이용 : 연 0.1%p
6. 이 적금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 연 0.1%p
7. 이 적금 만기고객 재가입 : 연 0.1%p

(단위 : 연, %, %p)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저축우대	함께 자동이체	적금 자동이체 실적을 달성한 인원수별 제공 (1명 : 0.1 / 2명 : 0.2 / 3명 ~ 10명 : 0.3)	0.1~0.3
	모임추천번호 가입	동일한 '모임추천번호'를 등록하여 적금을 가입한 인원수가 3명~5명인 경우	0.2
	목표저축 달성	목표저축액 설정 및 달성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0.1 / 500만원 이상 : 0.2)	0.1~0.2
거래우대	마케팅 동의	우체국 상품 · 서비스 마케팅 동의	각 0.1
	여행특화 체크카드 이용	우체국 여행특화 체크카드 이용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하이브리드[여행] 체크카드)	
	비대면 채널가입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만기고객 재가입 우대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 재가입 시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함께 자동이체 우대」는 예금주 본인 또는 타인이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최대10명)을 하고 자동이체 실적 횟수[주」]를 달성한 총 인원 수에 따라(1명 연 0.1%p, 2명 0.2%p, 3~10명 0.3%p) 적용

※ 주」자동이체 약정 1명당 실적 횟수

가입기간 개월 수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자동이체 약정 1명당 실적 횟수	3회	3회	4회	4회	5회	5회	6회

2. 「모임추천번호 가입 우대」는 이 적금의 최초 가입자가 가입 시 생성한 모임추천번호를 함께하고자 하는 타인에게 발송(최대 4명)하고 동일 모임추천번호를 등록하여 이 적금에 가입한 인원이 최초 가입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적용

※ 적금 가입 시 생성된 본인의 추천번호는 타인 4명까지 사용 가능
※ 적금 가입 당일해지, 가입취소 시 모임추천번호 등록인원에서 제외
※ 단, 동일한 모임추천번호는 재가입 시 입력 불가

3. 「목표저축 달성 우대」는 신규 가입 시 목표저축액[주]을 설정하고 만기까지 달성한 경우 금액에 따라 적용

※ 주」목표저축액 100만원 이상 ~ 500 만원 미만 : 연 0.1%p, 500만원 이상 연 0.2%p

4. 「마케팅 동의 우대」는 이 적금 가입 시에 우체국 상품 · 서비스 마케팅 동의한 경우

5. 「여행특화 체크카드 이용 우대」는 이 적금 신규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여행특화 체크카드[주]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주」우체국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 우체국 하이브리드[여행]체크카드

※ 단,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 (신용결제 제외)

6. 「비대면 채널가입 우대」는 이 적금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경우

7. 「만기고객 재가입 우대」는 이 적금 만기일부터 1년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시점에 적용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예금주에게 매월 자동이체 저축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가입 시 신청한

경우 「자동이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모임추천번호에 등록한 인원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가입 시 신청한 경우 「모임적금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 적금 가입 시 예금주가 통장명칭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는 「통장별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 적금 예금주가 제공기간(만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내 '우체국 외화배달서비스' 이용 시 외화배달수수료 1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2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4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면책조항】

우체국은 예금주 및 함께 자동이체 참여자 간에 이 예금을 매개로 발생한 거래, 분쟁에 대하여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우체국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는다.

제17조【기타】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 양도, 승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8.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1%p를 제공한다.

1. 우체국 온라인 적금 첫 거래 고객 우대 : 연 0.5%p
2. 급여이체 고객 우대 : 연 0.2%p
3. 추천번호 우대(각 연 0.1%p 씩 최고 연 0.2%p) : 연 0.2%p

4. 「매일 자동이체」로 100만원 달성 우대 : 연 0.2%p

(단위 : 연 %p)

우대이율 제공조건	우대이율
· 우체국 온라인 적금 첫 거래* 고객 우대 (*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적금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0.5
· 급여이체 고객 우대	0.2
· 추천번호 우대 (각 0.1% 씩 최고 0.2%)	0.2
·「매일 자동이체」로 100만원 달성 우대	0.2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온라인 적금 첫 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우체국 온라인 적립식 예금*의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가입 시점에 적용

※ 온라인 적립식 예금 :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적립식 예금

2. 「급여이체 고객」은 신규 가입 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급여성 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시점에 적용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3.「추천번호 우대」는 신규 가입 시 타인의 추천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할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연 0.1%p씩, 최고 연 0.2%p 적용

※ 적금 가입 시 생성된 본인의 추천번호는 만기일 이내에서 타인 2명까지 사용 가능

4. 「'매일 자동이체'로 100만원 달성 우대」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모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매일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가입기간 동안 '매일 자동이체'로 납입한 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직전 영업일에 우체국창구,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제11조【부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자동이체 약정을 통해 매일 자동으로 납입되는 「매일 자동이체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자동이체 약정금액은 1천원 이상 1만원 이내에서 1천원 단위로 설정하며 월 최대 저축한도 내에서 매일 자동이체가 실행된다.
2. 약정기간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이다.
3. '매일 자동이체' 약정은 일반 자동이체(월 1회 납입) 약정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이 예금은 매주 지정 요일에 우체국 스마트뱅킹앱 인증을 받은 모바일기기에서 알림(Push) 메시지를 받고 간편하게 저축할 수 있는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알림저축 설정금액은 1만원, 3만원, 5만원 중 선택하며 월 최대 저축한도 내에서 알림저축이 실행된다.
2. 알림저축 실행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특정 요일로 지정한다.
3.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고 실행기간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이다.
4. 자동이체 약정(월 1회 또는 매일 자동이체)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모바일기기 알림 설정, 우체국 스마트뱅킹 알림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알림(Push) 메시지의 정상적인 발송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오작동, 기기상의 결함, 네트워크 설정, 고객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알림저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이 예금은 만기일에 연결된 수시입출식 예금(모계좌)로 만기 해지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압류, 사고신고,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가 불가하다.

④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KOR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2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4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9 모바일 푸르니 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모바일 푸르니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2.05%p를 제공한다.

1. 스마트뱅킹으로 적금 첫 거래 고객 : 연 0.5%p
2. 우체국 오픈뱅킹서비스 등록 및 유지 : 연 0.55%p
3. 우체국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6회 이상 입금 : 연 1.0%p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스마트뱅킹으로 적금 첫 거래 고객」우대는 신규 가입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우체국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적립식 예금의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가입 시점에 적용
2. 「우체국 오픈뱅킹서비스 등록 및 유지」우대는 신규 가입일에 우체국 오픈뱅킹서비스에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며 만기일 전일까지 유지하는 경우 적용
3. 「우체국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6회 이상 입금」우대는 이 적금 가입기간 동안 우체국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1만원 이상 출금하여 이 적금으로 6회* 이상 입금한 경우 적용

※ 1만원 이상 입금건으로 월 1회만 인정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직전 영업일에 우체국창구,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제11조【부가서비스】

① 이 예금 신규 가입시 「환경지킴 약속」을 통해 일상생활 속 친환경 활동 실천 약속에 동참할 수 있다.

② 이 예금은 만기일에 연결된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만기 해지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압류, 사고신고,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가 불가하다.

③ 부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2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4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20,000 계좌로 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웰빙우대저축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웰빙우대저축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한다.
③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3조【저축한도】

이 예금의 가입최소 한도 및 최고한도의 제한은 없다.

제4조【가입기간 및 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② 이자지급은 정기이자계산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분기별 이자를 계산하여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에 통장원장에 기산한다.
③ 정기이자는 적수 누계액 × 이율(%)/365로 계산한다.

제5조【이자율 및 적용방식】

①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연 0.2%의 이율을 적용하고,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산이율 연 0.1%p를 추가한 연 0.3%를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결산기간 중 평잔산출은 전결산일 7일전부터 당결산기준일 7일전까지의 일잔액에 대한 평균금액으로 한다. 단, 당일합산 1,000만원 이상을 입금하고 7일이내에 1,000만원 이상을 출금할 경우 입금분 범위내에서 출금액만큼을 후입선출방식으로 평잔에서 제외한다.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6조【제공서비스】

① 이 예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입예금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서비스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예금주에게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로 구분된다.

② 기본서비스는 우체국 정기적금 가입 시 이 예금에서 적금납입을 자동이체 설정하는 경우 적금 우대이율을 연 0.1%p를 제공한다.

③ 부가서비스는 전자금융(인터넷, 폰, 모바일뱅킹) 및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 즉시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매 결산기별 10회까지 제공한다.

④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7조【해약거래】

이 예금은 전분기 결산일 이후부터 해약시점까지의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예금주에게만 가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처리한다.

제8조【부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전자금융약정, 카드발급, 금융자동화기기 약정, 자동이체약정이 가능하다.

② e-postbank예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

제9조【기타】

이 예금은 개인에 한하여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4-2. 주니어우대저축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주니어우대저축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의 성격】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6조【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 우체국 어린이 전용보험료 자동이체 시 연 0.1%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②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 산출은 전결산일부터 당결산기준일까지의 일잔액에 대한 평균금액으로 한다.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에 통장원장에 기산한다.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 12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정기이자는 적수 누계액 × 이율(%)/365로 계산한다.

제10조【우대서비스 제공】

① 신규 가입 후 거래실적에 따라 제휴기관인 M&서비스(http://www.skmns.co.kr)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무료이용권을 SMS서비스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가입 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1년간 제공하며, 우체국 및 제휴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

구 분	저축예금
최초가입	1개
펀드로 자금이체 시	1개
생 일	1개
어린이날 또는 학생의 날	1개
T-money 충전 시	4개(분기당 1개)
합 계	8개

※ 어린이날 및 학생의날 지급기준
- 만 12세 이하 : 어린이날 (5월 5일) / 만 12세 초과 ~ 만 19세 미만 : 학생의 날 (11월 3일)

※ 휴대폰무료이용권 등록 채널
- 스마트폰 : http//m.toyoucard.co.kr > 쿠폰 등록하기 / 온라인 : http//www.toyoucard.co.kr > toyou 카드 등록

② 이 예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현금 IC카드 초회 발급수수료 면제
2. 우체국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매 결산기별 10회 면제
3. 통장 정리 시 월별 입금액 및 출금액의 합계 표기

③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1조【기타】

① '어린이 적립식 펀드'의 가입 의사가 있을 경우에 수익증권 계좌개설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계좌개설 대행 이외의 업무는 해당 증권사에서 이뤄진다. 단, 어린이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은 주니어우대 저축예금으로 한정한다.

② 이 예금은 전자금융약정, 카드발급, 금융자동화기기 약정, 자동이체약정이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4-3. 2040$^{+\alpha}$저축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2040$^{+\alpha}$저축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제한이 없으나 1인 1계좌에 한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6조【기본이율】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다음 항목별 우대금리 표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3%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항 목	고객군별 우대금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 급여이체 시	0.1	-	-	-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0.1	0.1	0.1	0.1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	-	0.1	0.1	0.1
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	-	0.1	0.1	-
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	-	0.1	0.1
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	0.1	0.1	0.1	0.1
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0.1	0.1	0.1	0.1
8. 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	0.1	0.1	0.1	0.1
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0.1	0.1	0.1	0.1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매 결산일(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에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우대이율 조건을 재확인하여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급여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기준은『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아파트관리비 모계좌 약정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해당 모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분
4.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우체국 창구에서 약정한 자동이체' 또는 '우체국 적금 또는 보험 가입시 약정한 자동이체' 중 2건 이상을 약정한 분
5.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 발급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된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분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은 매 결산일 현재 우수고객인 분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에 통장원장에 입금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로 하되,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정기이자는 적수 누계액 × 이율(%)/365로 계산한다.

KOR 우정사업본부

제11조【우대서비스 제공】

① 이 예금에 대하여 아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평균 잔액을 산정하여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우대서비스 제공
2. 신규 가입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실적에 상관없이 우대서비스 제공
3. 우대서비스 내용

수수료 면제	대상별 우대서비스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고객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월 10회 면제
CD/ATM 이용수수료 (우체국기기에서 시간외 출금,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 이체에 한함)		전액 면제
현금IC / ONE Plus 카드 발급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제증명서 발급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기타】

① 이 예금은 개인에 한하여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4-4. 우체국 청춘연금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청춘연금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의 성격】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우대이율은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항목별 우대금리표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고 연 0.6%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단위 : 연 %p)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내 용</th></tr>
<tr><td>연금
금리(Ⅰ)</td><td>월평잔 50만원 이하</td><td colspan="2">월평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td><td colspan="2">월평잔 100만원 초과</td></tr>
<tr><td></td><td>0.1</td><td colspan="2">0.2</td><td colspan="2">0.3</td></tr>
<tr><td>연금
금리(Ⅱ)</td><td colspan="5">o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후 동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후 이용실적
<table><tr><td>월 30만원 이상</td><td>월 40만원 이상</td><td>월 50만원 이상</td><td>월 60만원 이상</td><td>월 70만원 이상</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r></table>o 동 계좌를 통해 우체국 적립식예금으로 자동이체 실적
<table><tr><td>월 30만원 이상</td><td>월 40만원 이상</td><td>월 50만원 이상</td><td>월 60만원 이상</td><td>월 70만원 이상</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r></table></td></tr>
<tr><td>요구불
첫고객
금 리</td><td colspan="5">o 우체국 요구불 계좌 처음 개설한 경우 연 0.2%p
* 단,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되, 익월 말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연금이체 실적을 체크 후 적용</td></tr>
</table>

※ 4대 연금이체 실적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또는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본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매 결산일(매월 넷째 토요일)에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며, 제7조에서 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이율만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매월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제7조에서 정하는 우대이율 조건이 충족되면 실적에 따라 적용한다.

1. 연금금리(Ⅰ)

o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전월 월평잔고 실적이 우대이율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당월 결산기 동안 적용

2. 연금금리(Ⅱ)

o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동 계좌를 우체국체크카드 결제계좌 지정하고 후 전월 이용 실적(누계액)에 따라 당월 결산기 동안 우대이율 적용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o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동 계좌를 우체국 적립식상품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하고 월 자동이체금액(누계액)에 따라 당월 결산기 동안 우대이율 적용

3. 요구불 첫고객 금리

o 우체국 요구불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금리 적용하되 가입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연금이체 실적을 체크 후 적용

* 첫 고객 제외대상

- 활동계좌, 정리계좌 중 요구불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한 고객
- 1년 이내 우체국 요구불계좌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

단, 국고 귀속된 요구불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첫 고객임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원가일)에 통장에 입금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

② 최초 예금일에서 원가일 전일까지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다음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 계산 기간(결산기)으로 한다.

③ 매일의 최종 예금 잔액에 대하여 예금액별로 해당이율로 매일 이자를 계산한다.

제11조【부가서비스 제공】

① 이 예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 조건에서 정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당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적용된다.

구 분		서비스 내용
Ⅰ	전월 연금 이체 실적	o CD/ATM 이용수수료 면제(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시간외 출금, 우체국 간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에 한함) o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o 현금 IC/ONE PLUS카드 발급 면제
Ⅱ	전월 연금 이체 실적 + 연금금리(Ⅱ) 실적	o CD/ATM 이용수수료 면제(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시간외 출금, 우체국 간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에 한함) o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o 현금IC/ONE PLUS카드 발급 면제 o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면제

② 신규가입자의 경우는 신규 가입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조건에 상관없이 부가서비스(Ⅰ)이 제공된다.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4-5. 우체국 e-기업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e-기업전용 통장(이하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기업자유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7조【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원금에 더한다.

1. 이자계산 기준일 :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
2. 이자지급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②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예치기간 및 금액에 따른 해당 게시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거래방법】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입금 및 지급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채널(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우체국 창구에서 카드에 의한 지급 또는 무통장 입출금이 가능하다.

1. 고객의 요청
2. 전산장애로 인한 전자금융채널 거래 불가능
3. 기타사유로 인한 창구운영의 불가피

제9조 【지급방법】

이 예금을 찾을 때는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제10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 가입자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최장 10년까지)를 제공한다.

②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전 1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2조【기타】

이 상품은 우체국 현금카드, 체크카드,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사항은 해당 카드 약관 및 우체국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4-6. 우체국 100일+주머니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100일+주머니통장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가입일로부터 101일 이후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4%p를 제공한다.

1.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하는 고객 : 연 0.1%p
2. 이 예금의 결산기간 평잔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연 0.2%p
3. 이 예금에서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4. 이 예금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월 20만원 이상 이용 : 연 0.1%p

5. 이 예금에서 우체국펀드로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단위 : 연 %p)

구 분	우대이율 제공조건	이율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우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하는 고객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이율 적용	0.1
평잔실적 우대	이 예금의 결산기간 평잔 500만원 이상인 경우	0.2
자동이체 우대	이 예금에서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우체국적금 자동이체)	0.1
체크카드 우대	이 예금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월 20만원 이상 이용	0.1
펀드거래 우대	이 예금에서 우체국펀드로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0.1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은 '가입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준'에 따라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가입일로부터 101일 이후 매 결산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우대」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한 고객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이율 적용

※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제외 대상
- 활동계좌, 정리계좌 중 수시입출식 예금을 1개 이상 보유한 고객
- 1년 이내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
- 단, 국고 귀속된 수시입출식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첫 고객에 해당

2.「평잔실적 우대」는 이 예금의 결산기간 평균 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결산기간 : 전월 결산일 다음날부터 당월 결산일 까지

3.「자동이체 우대」는 전월(1일~말일) 동안 이 예금에서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우체국적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

※ 공과금 자동이체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 우체국 수시입출식 계좌간 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예약이체 제외

4.「체크카드 우대」는 전월(1일~말일)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5.「펀드거래 우대」는 전월(1일~말일)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 펀드계좌로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2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20,000 계좌로 한다.

④ 이 예금의 판매기간은 2019. 12. 02 ~ 2020. 02. 29. 까지로 한다.

※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4-7.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Young利(영리)한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신규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5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이다. (1인 1계좌)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

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0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아래 기본조건에서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기본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휴대폰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적금 등 계좌 간 자동이체 약정 · 유지
2. 전자금융 정기예금 또는 적금의 모계좌로 지정 · 유지
3.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利한 체크카드』 1회 이상 이용

※ 단,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기준에 따라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체국의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4. 기본 우대서비스 내용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 즉시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 영업시간 내·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② 이 예금은 아래 추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利한 체크카드』1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2. 추가 우대서비스 내용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월 5회)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내·외 출금 수수료 ※ 타 금융기관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 은행 제휴 CD기 및 VAN사 CD기 제외)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조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우대서비스는 고객 연령 만 35세까지 적용한다. 단, 가입시부터 만 35세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⑤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1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2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5-1. I-Card 정기예금 특약

I-Card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은 이 예금을 질권설정하여 신용카드(현대카드-I)를 발급하며, 현대카드-I(이하 "I-카드"라 한다)의 이용 실적에 따라 이 예금의 이자와 별도로 Point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금이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예금의 거래에 있어 이 특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시행령, 현대카드 이용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기본사항】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②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5년이며, 1년 확정형 정기예금으로서 가입 후 5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가입응당일(이 예금 가입일자기준 매년 도래일)에 자동 재가입된다.

③ 이 예금은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 및 이중 질권설정, 원부변경 등은 불가하다.

제3조 【이자율 적용】

① 최초 가입후 1년은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이율+0.4%를 적용한다. 이 예금이 가입응당일에 자동 재가입된 경우 가입응당일의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이율+0.4%를 1년간 적용한다. (가입일로부터 매 1년 가입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을 가입 응당일로 하며, 가입 응당일이 없을 경우 그달의 말일을 가입응당일로 함)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이전 중도해약시 1년미만 경과분 또는 년단위 경과 1년 미만 잔여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중도해약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만기후 이자율은 가입 후 5년경과 시점부터 적용하되, 6개월 이내 예금은 만기일자를 기준으로 "챔피언정기예금"약정이자율의 1/2이며, 6개월 초과 예금은 만기일자 기준으로 당시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조 【이자의 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에 일시 이자를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만기일 전 2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년단위)에 대하여 이자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분할해지】

분할해지는 최초 가입후 3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질권설정액을 제외한 잔여금액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6조 【질권설정/상계처리/직권해지】

① 질권설정의 효력은 동예금의 원금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② 금액에 대하여 추가 질권설정이 가능하다.
③ 이 예금 해약(만기, 중도, 만기후)시 I-Card 이용금액중 미결제 대금이 있을 경우 이 예금과 상계된다.
④ 현대카드 연체관리 프로그램에 적용된 연체고객은 동 예금에대하여 직권해지 할 수 있다.

제7조 【신용정보의 제공】

우체국은 예금가입에 따른 기본정보(인적사항, 가입금액 정보)를 현대카드에 제공하며, 현대카드에서는 I-카드의 미결제 합계금액 정보를 우체국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Point의 적립 및 지급】

① Point 적립금은 신용판매금액과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Point 지급기준표”에 따라 적립되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또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② “업종별 Point 지급기준표”는 예금가입일에 해당하는 기준표를 적용하되, 기간 중 Point 지급 기준표가 변동될 경우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변동된다.
③ Point 적립금은 I-Card 이용대금을 정상결제일에 결제한 경우만 Point가 적립되며, 연체결제, 일부결제 등은 전혀 적립되지 않는다.
④ Point 적립금 지급시기는 해약(만기, 중도, 만기후) 후 익월5일 이내 예금주 계좌로 이체된다. (단, 미정산 금액이 존재할 경우 익익월 5일 이내 이체) 또한, 가입 응당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 응당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이체된다.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제9조 【현금카드 기능】

I-카드는 최초 이용대금 결제계좌에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한다. 다만, 가족카드는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조 【해약후 재가입】

5년 만기가 아닌 중도해지자(1년경과, 2년경과 등)는 이 예금으로 즉시 가입가능하나, I-카드의 발급은 이 예금 해약일 기준 익월에 발급된다.

제11조 【결제계좌】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는 변경 가능하나, 반드시 우체국 요구불예금만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무료보험서비스】

① 이 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이 무료로 가입된다.

② 동 서비스는 이 예금 해약 또는 분할해지로 가입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될 경우 자동해지 된다.

③ 보험기간은 이 예금 신규 가입시점부터 1년간이며 매년 가입응당일에 자동재가입된 경우는 신규가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료보험서비스에 가입되지 않는다.

부 칙

이 특약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2. EVERRICH 회전식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EVERRICH 회전식정기예금(이하"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인터넷은 개인에 한한다)

제3조 【저축한도】

이 예금은 10만원 이상 가입가능하며 최고한도는 없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5년이다.

제5조 【회전주기】

① 이 예금의 회전주기란 최초 예금일로부터 만기약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단위는 1개월, 3개월, 6개월로 한다.

② 회전주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범위내에서 동일 회전주기로 자동 재약정된다.

③ 이 예금의 가입기간 중에는 회전주기를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최초 회전주기까지는 가입당시 이자율을적용하며, 최초 회전주기가 경과한 이후에는 매 회전주기 경과시점 응당일의 이자율로 적용한다.

② 가입일로부터 매 회전주기 경과시점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응당일로 하며, 응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을 응당일로 한다.

제7조 【이자지급 및 계산방법】

① 이자지급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② 이자계산방법은 이 예금 지급시점에 회전주기별로 이자액을 산출하여 합산

지급하는 단리의 방법을 적용한다.

제8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시는 회전주기를 경과한 경우는 동 예금의 회전주기별 약정이율을 지급하고, 회전주기 미경과의 경우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 【가입기간 이후(5년후)】

가입기간 이후는 회전주기와 관계없이 가입기간 만료시점(5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는 동 예금의 회전주기별 약정이자율의 1/2을 지급하고 6개월 초과분은 당시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

제10조 【EVERRICH 인터넷회전식정기예금】

① EVERRICH 회전식정기예금을 우체국 인터넷뱅킹서비스(www.epostbank.go.kr)를 통하여 가입 등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EVERRICH 인터넷회전식정기예금의 가입시간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하여 인터넷뱅킹홈페이지(www. epostbank.go.kr)를 통해 게시한다.

③ 신규가입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서비스에서 등록한 출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계좌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 예금을 해지시에는 원리금을 모계좌로 이체 지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3.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이하'이 예금'이라함)거래는 기준(시장)지수에 의해 금리 지급조건이 결정되는 정기예금으로 주가지수정기연계정기예금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신규가입일로부터 모집마감일까지의 기간과 모집마감일 다음날(기준지수결정일)부터 예금만기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전 기간을 말한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상품유형별로 1인 1계좌 가입가능하다.

제6조【용어의 정의】

① 기준(시장)지수 : KOSPI200지수 및 개별주가등 주가지수와 국제 금가격, 환율, 채권금리 등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파생거래가 가능한 모집일에 확정한 지수를 의미하며, 기준지수 수준 및 지급이자 결정방법은 모집일에 정한다.

② 모집일 및 모집기간 : 모집일은 이 예금의 판매를 위한 판매개시일을 말하며, 모집기간은 판매마감일을 말한다.

③ 모집기간 : 모집일로부터 모집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모집기간이자 : 모집당시 은행에서 정한 이율로서 모집기간중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 적용되어 계산되는 이자를 말한다

⑤ 지급이자 : 계약기간동안 적용하는 이자를 말하며, 지급이자의 구체적 결정구조는 고객확인서에 표시 된다.

⑥ 지수결정일 : 이자지급을 위해 모집일에 확정한 기준지수의 가격을 결정하는

날을 말한다.

⑦ 조기상환 : 가입시점에 고객과 은행이 합의한 특정조건이 충족되어, 예금의 만기일이전에 이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품유형 및 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에는 만기상환형과 조기상환형이 있으며, 각 예금에 따라 상환방법은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만기상환형은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③ 조기상환형은 특정시점에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이라도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8조【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이율은 모집기간 중 이자와 시장지수의 변동에 따른 약정이자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모집기간 중 이자는 예금의 신규가입시 은행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③ 약정이자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장지수는 신규가입시 은행이 정하여 고지한 지수로 한다.

④ 만기상환형의 약정이자 계산은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조기상환형의 약정이자계산 및 조기상환방법은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⑥ 약정이율 조견표는 기준지수결정일 다음 영업일 이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신규가입시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⑦ 이 예금의 만기 후 이율은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중도해지】

① 이 예금은 모집기간 경과 후에는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입자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우체국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신규가입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수수료율에 의해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가입원금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제10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하여 인출 할 수 없다.

제11조【기 타】

이 예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규가입시 고객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특약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4. 실버우대연금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실버우대 연금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저축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한한다.

제4조【저축한도 및 가입기간】

① 이 예금은 예금 가입후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고 연금지급기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이다.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②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거치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구성하며, 거치기간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연단위, 연금지급기간은 1년이상 2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각각 정할 수 있다.

제5조【예금의 지급방법】

① 이 예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발생된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원금에 합산한 후 원리금을 총 지급횟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원리금분할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정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원리금분할액과 매 연금회차의 이자(원천징수액 제외)를 합한 금액이다.

③ 연금지급방법은 고객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우체국 요구불예금 계좌로 자동입금된다.

제6조【기본이율】

①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만기일시 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② 거치기간내 금리변동주기를 1년, 2년, 3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로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③ 연금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1년만기(월이자지급식) 이율을 연단위로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거치기간에는 실버금리, 보너스금리, 우체국장전결금리를 적용하며 연금지급기간에는 실버금리를 적용한다.

②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실버금리 : 만 50세 이상의 실버고객 연 0.1%p

④ 보너스금리 : 다음 각 호에 해당시에 각 항목당 연 0.1%p씩 최고 연 0.3%p까지 우대이율을 적용, 단 제2호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을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수령하는 고객
2.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의 퇴직금을 동 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3.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이며 자동이체약정 2건 이상인 경우
4. 우체국 체크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우체국장전결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전결금리 적용

⑥ 우대이율은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을 기준으로 각 우대이율 적용 항목을 재확인하여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⑦ 우대금리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기본이율은 금리변동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며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③ 우대이율은 금리변동시 각 우대이율 적용 항목별로 재산정하여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적용한다.

④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 및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에 각 우대이율 항목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다.

1.「퇴직금 예치」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까지)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퇴직금 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4대연금 수령 고객」은 신규 가입시 증명서류(연

금수령확인서, 우체국 요구불예금 통장 등)를 제출하거나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전산 조회 기준일 : 신규가입일 전월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3. 「요구불예금 거래실적」은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로 한다.
4.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가입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 3개월)로 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① 거치기간의 이자는 거치기간 종료일에 거치기간동안 발생된 이자(원천징수액 제외)를 원금에 가산한다.

② 연금지급기간의 이자는 연금지급기간 개시일부터 매 연금회차별 연금지급액(원리금분할액 + 매 연금회차 이자 - 이자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금지급주기별로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여기서 연금지급기간 개시일은 거치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③ 연금지급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동 입금한다.

제10조【이자계산】

①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② 거치기간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기본이율에 재 산정된 우대이율을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복리 이자계산(세후복리)한다.

1. 거치가간의 이자 = 원금 × 적용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③ 연금지급기간에는 매 1년 연금지급개시일 해당일마다 고시한 기본이율에 실버금리를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단리로 이자계산한다.

1. 매 연금회차 이자 = 매 연금회차 원리금잔액 × 적용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제11조【중도해지】

① 거치기간내 중도해지

1. 금리변동주기 단위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주기별 해당 적용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을 적용하며, 금리변동주기 단위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일 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2. 중도해지 이자 =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② 연금지급기간내 중도해지

1. 연단위 경과기간 : 연단위별 해당 적용이율(기본이율+실버금리) 적용
2. 연단위 미경과 기간 : '연금지급개시일' 또는 '매 금리주기변동 해당일' 고시되는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매 연금회차의 원리금잔액』에 대하여 셈하여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지급주기별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3. 매 연금회차의 중도해지이자 산출방식

o 중도해지이자 = 원리금잔액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o 지급액 = 원리금잔액 - 기지급 회차별이자 + 기지급 이자소득세 + 회차별 중도해지이자 - 이자소득세

제12조【만기후해지】

매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액을 고객 지정계좌로 자동 입금하므로 만기 후 이율은 없다.

제13조【연금지급의 제한】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등록 계좌는 연금지급이 불가하다. 다만, 지급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제14조【세금관계】

① 일반과세,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 가능하다.

② 원리금 균등지급에 따른 원금 감소를 반영하여 고객이 최초 지정한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한도 자동 감액처리 한다.

제15조【기타】

①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거치기간 만료일(연금지급 개시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만기일(최종 연금지급일)에 자동 해약된다.

③ 우수고객우대금리,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승인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④ 이 예금은 분할인출,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5-5. 그린보너스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그린보너스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계좌 수에 상관없이 1인 총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제6조【기본이율】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신규가입일 현재 기간별, 금액별 우대금리 적용

③ 그린금리 :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 충족 시 각 연 0.1%p씩 최고 연 0.2%p 적용

1. 전자통장(별도의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IC칩이 내장된 ONE-Plus 카드에 다수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통장) 이용고객
2. 자전거 및 대중교통 등 녹색운동 동참 고객

④ 보너스금리 :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 충족 시 각 연 0.1%p씩 최고 연 0.3%p 적용

1. 에너지절약 프로그램(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탄소마일리지 등) 이용 고객
2. 경차 또는 승용차 요일제 이용 고객

3. 친환경 또는 저공해 자동차 이용 고객
4. 녹색인증 건축물 소유 또는 입주 고객

⑤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⑥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

제8조【이자지급방식】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 시 일시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등록된 가입자 명의의 우체국 요구불계좌로 자동지급하며 휴일기간에 대한 이자는 모든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방식을 적용한다.

제12조【자동 만기해지】

① 만기시 수령금은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자동 지급하며 가입 시에 가입자 명의의 요구불예금 계좌를 지정한다.

② 만기일 전에 본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만기금을 수령할 요구불예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기 타】

① 이 예금은 전자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은 거치식 예금 통장을 사용한다. 가입 후 전자통장에서 종이통장으로 또는 종이통장에서 전자통장으로 전환이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④ 우수고객우대금리 및 본부승인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⑤ 이 예금은 예금 잔액의 95%범위 내에서 정해진 한도액까지 예금담보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5-6. 우체국 S뱅킹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S뱅킹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우체국인터넷뱅킹 예금거래 특약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인터넷뱅킹우대금리에 연 0.5%p를 가산 적용한다. 단, 인터넷뱅킹우대금리는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

제7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 시 일시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8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9조【중도해지】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신규 가입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1조【기 타】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우체국 인터넷뱅킹에 등록한 출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함)에서 이 예금의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② 이 예금은 해지 시 모계좌로 이체된다.
③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④ 이 예금은 예금우수고객 우대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⑤ 이 예금은 예금 잔액의 95%범위 내에서 정해진 한도액까지 예금담보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⑥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⑦ 이 예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7. 주니어우대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주니어우대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②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1인 3계좌 까지 가능하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또는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③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④ 주니어금리 : 만 19세 미만의 주니어고객 연 0.1%p

⑤ 보너스금리 :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연 0.1%p 제공

1.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시 연 0.1%p
2.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 시 연 0.1%p

⑥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 전환가입」은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 해지일과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신규 가입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2.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은 신규 가입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주니어금리 및 보너스금리는 자동재예치 시점의 해당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 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월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또는 자동재예치 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 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또는 자동재예치 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또는 자동재예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자동재예치】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동재예치 약정이 가능하다.

② 최초 가입기간 만기 시 원리금(세금공제 후)이 1년 단위로 자동재예치되며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18년(만 19세 미만까지) 자동재예치된다.

③ 자동재예치 시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은 매 재예치 시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16조【기타】

이 예금은 양도,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8. 스마트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스마트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③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④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 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인터넷뱅킹 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2. 상품 우대금리 : 연 0.2%p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9. 실버우대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실버우대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하며,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③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④ 특별우대금리 :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3%p 제공

1. 만 50세 이상의 실버 고객이면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이거나 이 예금을 3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연 0.1%p
2. 4대 연금을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 0.1%p

※ 4대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3.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의 퇴직금을 이 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연 0.1%p

4.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이며 자동이체 약정 2건 이상인 경우 연 0.1%p
5. 우체국 체크카드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

⑥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재예치)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에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만 50세 이상의 실버 고객이면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이거나 실버우대정기예금을 3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4대 연금 수령」은 신규 가입시 증명서(연금 수령확인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통장 등)를 제출하거나 수시입출식 예금 전산 조회(전산 조회 기준일 :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전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까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예치」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신규 가입일의 전전전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일까지)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퇴직금 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시입출식 예금 거래실적」은 수시입출식 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 가입일(재예치일)의 전전전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전일까지)로 한다.
5.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 가입일(재예치일)의 전전전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전일까지)로 한다.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월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분할해지】

① 가입기간(재예치기간) 동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가입(재예치) 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천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자동 재예치】

① 이 예금은 만기일에 원리금(또는 원금)을 2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 서비스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 재예치 금액은 '원금' 또는 '원금 및 이자' 중 선택 가능하며 원금만

재예치하는 경우 이자는 본인명의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자동 입금된다.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인 경우 '원금'만 재예치 가능

※ 압류, 사고신고,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자동 재예치가 불가함

3. 적용이율은 자동 재예치 시점의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1. 이웃사랑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이웃사랑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적금 종류는 적립식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장기·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로 하며 1인 2계좌에 한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가입금액】

신규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1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며 최고한도는 1계좌당 3천만원 이하이다.

제6조【기본이율 및 이자계산】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신규가입일 현재 이웃사랑자유적금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일반 중도해지】

① 중도해약 시 1개월 미만 경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적금 만기 전 일반 중도해지 할 경우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에 우대이율을 지급한다.

제9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정기적금의 예치 기간별 만기이율을 지급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 해지이율을 지급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 구입에 따라 적금을 중도 해지 청구한 경우
2. 계약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 자녀의 결혼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청구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예금주, 예금주 배우자 또는 미혼의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비를 목적으로 적금을 중도 해지 청구한 경우 (최소 2주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③ 위의 각 호의 경우 예금주가 위 사실을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2. 가족多사랑(정기, 자유)적금 특약

제1조【특약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가입대상】

① 가족多사랑 정기(자유)적금(이하 "적금"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우체국창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가입은 불가하다.

제3조 【저축한도】

월불입금 기준으로 1만원 ~ 500만원 이하로 한다. 단, 월불입금 적립단위는 1원으로 한다.

제4조 【가입기간 및 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 3년으로 한다.

②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지급식으로 한한다.

제5조 【이자율 및 적용방식】

① 기본이율은 정기적립식의 경우 우체국 정기적금상품 이율의 기간별 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유적립식의 경우 정기적립식 상품이율-연 0.1%로 한다.

② 중도해지이율과 만기 후 이율, 만기도래 전 해약지급 이율은 우체국 정기적금 상품 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정기적립식의 만기도래 전 지급 시에는 모든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이후의 이자계산은 각종 우대이율을 포함하지 않고 약정이율로 계산한다.

⑤ 이 예금의 이자율은 별도 고시하되,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고시일자 이후 가입 분은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 【제공서비스】

① 기본서비스(공익형 우대이율 제공과 웰빙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한다.

② 기본서비스중 공익형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중 본인 결혼 시(연 0.2%), 부모봉양 시(연 0.1%), 가입자의 만 6세까지의 자녀와 출산 자녀수에 따라(만6

세까지의 자녀 1명 : 연 0.1%, 만 6세까지의 자녀 2명 : 연 0.2%, 만 6세까지의 자녀 3명 이상 : 연 0.3%) 추가로 제공한다.

③ 기본서비스 중 웰빙서비스는 종합건강검진 할인서비스로 정상 수가의 특별할인가를 적용한다.

④ 부가서비스는 부가형 우대이율 제공으로 구성되며 월불입금 기준 50만 원 이상 가입고객과 우체국 요구불예금에서 12회차이상 자동이체 시 각각 연 0.1%를 추가 제공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제공서비스) 3항(종합건강검진 할인서비스)은 2014년 12월 2일까지 제공한다.

6-3. 주니어우대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주니어우대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의 성격】

이 적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3년(연단위)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1년단위로 자동재 예치 약정이 가능하다.

제5조【적립금액】

신규 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제한이 없으며 적립일 및 적립횟수를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도 가능하다.

제6조【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정기적금 해당기간 만기 이율에 연 0.1%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주니어우대저축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 시 연 0.1%p
2. 형제, 자매, 남매의 동시 가입 시 연 0.1%p
3. 만기해지 후 거치식 예금(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으로 전환 시 해당 거치식 예금 이율에 연 0.05%p 우대

②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한다.

1. 주니어우대저축예금에서 자동이체 약정은 만기해지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자동이체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는 우대이율 제공이 불가하다.
2.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은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며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확인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기본이율로 계산한다.

제10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 자동 재예치】

① 신규 가입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동 재예치 약정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18년(만 19세 미만까지)동안 세후원리금을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된다. 단, 재예치 기간내에 만 18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재예치까지만 가능하다.

② 자동 재예치시 **기본이율은 재예치 시점 기간 이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율(자동이체 약정,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 거치식 예금 전환)은 최초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4조【우대서비스 제공】

① 신규 가입 후 거래실적에 따라 제휴기관인 M&서비스(http://www.skmns.co.kr)에서 제공하는 휴대폰무료이용권을 SMS서비스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가입 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1년간 제공하며, 우체국 및 제휴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

구 분	자유적금
최초가입	1개
자동이체	1개
생 일	1개
어린이날 또는 학생의 날	1개
합 계	4개

※ 어린이날 및 학생의 날 지급기준

- 만 12세 이하 : 어린이날 (5월 5일)
- 만 12세 초과 ~ 만 19세 미만 : 학생의날 (11월 3일)

※ 휴대폰무료이용권 등록 채널

- 스마트폰 : http//m.toyoucard.co.kr > 쿠폰 등록하기
- 온라인 : http//www.toyoucard.co.kr > toyou 카드 등록

제15조【분할해지】

가입기간 동안 3회(최종 해지 포함)까지 적금 잔액의 90%범위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적용이율은 분할해지 시점의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6【기타】

① 이 예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② 양도 및 담보 제공이 제한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4.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적금의 종류는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7 ~ 10등급)인 만 20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 신용등급은 신규 가입시 가입일 현재 우체국에서 조회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만기로 한다.

제5조【적립금액】

신규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1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고 총 저축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적금은 적립일 및 적립횟수를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도 가능하다.

제6조【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1년 만기 기본이율 - 연 0.1%p로 한다.

제7조【우대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이자는 매회 납입금액의 일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KOR 우정사업본부

③ 이 적금의 이자율은 별도 고시하되,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동일자 이후 가입분은 변경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은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적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양도 및 담보 제공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5. 가계우대정기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가계우대정기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적금 종류는 적립식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다.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가입금액】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예치(계약액) 한도는 5,000만원(이자포함)으로서 개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약이 불가하다. (계좌수 제한없음)

제6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가계우대 정기적금의 기본이율은 가계우대적금 고시금리를 따른다.

③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우대이율은 다음과 같다.

1. 웰빙우대저축을 출금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하면 연 0.1%p우대이율을 적용한다.
2. 인터넷뱅킹 가입시 가계우대정기적금+연0.2%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도해지 및 만기이율】

① 적금 만기 전 일반 중도해지 할 경우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만기후 이율은 정기적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이자계산법】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9조【기타】

① 이 적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이 적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6.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특약

이 상품은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약정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므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으나, 반대로 금리가 하락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1조【적용범위】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저축" 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이 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년 단위로 정하며 계약기간이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1회에 한 해 가능하다.

제3조【저축방법 및 저축한도】

이 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제4조【약정이율 적용】

이 저축은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입일 당시 우체국에 게시한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3년 경과시부터 3년경과 시점의 우체국에 게시한 이 저축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이후 이율 변경시에는 이율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5조【중도해지】

이 저축을 신규가입 후 5년 경과하기 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우체국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요청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우체국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제6조【예치한도 변경】

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체국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비과세 처리】

우정사업본부

이 저축의 만기를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 단, 이 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의거 원천징수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원칙적으로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불가하나,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 및 착오에 의한 경우는 가능하다.

② 이 저축의 중도 분할해지는 불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하다.

③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계약기간)의 만기연장 및 제6조(예치한도 변경)의 한도 증액은 2013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6-7.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적금의 종류는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1세대 1명(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 3년으로 월단위이다.

제5조【적립금액】

신규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원단위로 적립이 가능하고 총 저축한도는 900만원이며, 분기당 납입한도는 100만원이다.

제6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에 고시된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의 기간별 기본이율 - 연 0.1%p)로 한다.

② 우대이율은 기본이율과 동일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우체국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 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7조【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은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만기 후 이율】

만기 후 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적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이 적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6-8 EVERRICH(인터넷) 자유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EverRich (인터넷)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가입대상】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다. 단, 법인(단체)의 경우 축하이자, 특별중도해지, 여행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다.

② 이 적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확인 후 가능하다.

③ 1인 1계좌에 한하며, 생계형 및 세금우대 적금으로 가입 가능하다. 단,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3조 【가입기간 및 저축한도】

①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일단위로 만기설정 가능하다.

② 저축한도는 1일 1만원이상 10원 단위로 적립하며, 월간 적립금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단, 이 적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의 월간 적립금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이자지급 및 계산방법】

① 일적수 누계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만기일에 지급한다.

② 이 적금 만기해약 가입자에 대하여 우대이자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중에 결혼한 가입자에 대하여 축하이자를 지급한다.

③ 우대이자 및 축하이자는 반드시 만기해약한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적용 기간은 가입일자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이다.

④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 휴일은 만기이율 적용(우대이율 또는 축하이율은 적용하지 않음)한다.

⑤ 일반중도 또는 특별중도 해약시 가입후 30일 미만 경과분과 예치기간 30일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특별중도해지】

① 이 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주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체국창구에서 가입일로부터 6개월경과후 중도해지를 신청할 때에는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 예금주의 결혼(또는 허니문 여행)에 따른 이 적금의 중도해약의 경우
2. 예금주의 자유(배낭)여행에 따른 이 적금의 중도해약의 경우
3. 예금주의 어학연수에 따른 이 적금의 중도해약의 경우

② 위의 각 호의 경우 예금주가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전후에 우체국에 지급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적립금 납입방법】

① 적금의 적립금은 창구,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 또는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하여 적립한다. 단,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한 고객은 창구를 통한 납입은 불가하다.

② 적립방법은 적립금 한도액범위 내에서 납입일자, 납입횟수, 납입금액 등을 정하지 않고 자유적립식으로 적립한다.

제7조 【정보제공】

적금 가입시 가입절차에 의한 고객정보제공에 동의한 예금주의 성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정보가 제휴여행사에 제공된다.

제8조 【적금 운영시간】

이 적금을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할 경우 08:00～22: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제9조 【적금의 해약】

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한 이 적금의 해약(만기, 중도)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금액은 모계좌로 이체된다.

② 계약기간 중 결혼한 가입자는 만기해약시 결혼증명 관련서류와 무통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창구에 지급 청구한다.

③ 특별중도해약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전후에 우체국 창구에서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유발생일은 결혼의 경우 결혼일자, 여행(연수)서비스는 출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전환서비스 제공】

① 이 적금 만기 해약일 당일에(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익영업일 22:00까지) 챔피언정

기예금 또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전환 불가)

② 이 적금은 해약 실지급액 범위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전환가능하다.

③ 이자율은 만기해약일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인터넷뱅킹 이용시에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고시이율) + 0.05%P 적용한다.

제11조 【통장의 발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한 적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특약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9 학생장학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학생장학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인학원을 포함한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 【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한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적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0원이상이며 최고 가입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인감의 신고】

이 적금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우체국에 거래용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거래용 인감은 당해 학교장의 직인 또는 학부모의 인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시기】

이 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졸업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상해, 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가입자가 학교를 퇴교 또는 퇴학하였을 때
3. 생계곤란, 병원진료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7조 【계속예입의 제한】

이 적금의 예입에 있어 졸업 예정학년은 졸업년도 2월말 까지의 예입에 한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10 우체국 행복가득희망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행복가득희망적금(이하 “이 적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생계형저축 약관, 세금우대 종합저축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자는 패키지별로 구분한다. (패키지별 1인 1계좌)

패키지 구분	희 망	행 복
가입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소득 연 15백만원 이하 근로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 기증자, 다자녀가정, 부모 봉양자, 협동조합 조합원, 소상공인, 농어촌 읍.면 단위 거주자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적립금액】

이 적금은 납입 회차당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월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및 우체국에 고시한 정기적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이 적금은 패키지별 가입대상자 구분에 따라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희망 패키지 가입대상자는 연 5.0%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2. 행복 패키지 가입대상자는 연 0.3%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해약 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이자는 매회 납입금액의 일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0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단, 가입일로부터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발생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 1개월 전 후에 우체국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입원 : 입원확인서(2주 이상)
3.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6.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제14조【기타】

① 이 적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② 이 적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적금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내에서 정해진 한도액까지 예금담보 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6-11. 우체국 재형저축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우정사업본부 (이하 '우체국' 이라고 한다) 와의 「우체국 재형저축」(이하 '이 예금' 이라고 한다)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 농어촌특별세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은 적립식예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제4조【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① 이 예금은 분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단,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이다.

② 우체국은 세금우대저축한도집중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저축 가입 가능 한도를 조회 ·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세율의 적용】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1. 이 약관 제3조 각 호의 가입자격, 제4조 제1항의 분기 가입한도, 제5조 제1항의 계약기간, 제8조 제1항의 가입자격 확인서류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제7조【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

① 이 예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나.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고객

다.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예금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고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2.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1호에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천재 · 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조【가입자격의 검증】

① 이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체국은 고객이 우체국에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및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3조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처리한다.

④ 제3항의 우체국의 가입자격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객이 제3조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고객이 가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우체국에 통지한다.

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우체국에 그 사실이 통지된 경우 그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입금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된다.

⑥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우체국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가입자격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

① 우체국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가입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등기취급)으로 알린다.

② 고객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체국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며, 고객의 이의가 수용되어 가입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우체국에 통보한 경우 우체국은 제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중단된 입금이 다시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한다.

제10조【제한사항】

① 이 예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이 예금은 계좌분할 및 일부 해지 할 수 없다.
③ 이 예금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 법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린다.

*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약관변경
① 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율의 적용】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되, 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 간 확정금리(기본이율 및 우대이율)를 적용하고, 3년 이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는 변동금리(기본이율)를 적용하여 해지 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12조【중도해지이율】

①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 당시 우체국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적용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에 중도해지 할 경우 :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2.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중도해지 할 경우 : 이 예금의 기본이율 적용

② 이 예금을 제7조 제2항에 의해 특별해지를 하는 경우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예금의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후이율】

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지급청구 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이 예금의 기간별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우대이율】

이 예금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간 최고 연 0.3%p까지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주1)]이 있는 경우 : 연 0.1%p
2.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3.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주2)]이 있는 경우 : 연 0.1%p
4.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 연 0.1%p

주1) 급여이체는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또는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주2)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을 활용하여 수시입출식 통장에 입출금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우체국 예금상품에 가입한 경우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다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년 8월 6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12. Young모아 e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Young모아 e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38세 이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③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를 통해 출력 할 수 있다.

④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이하 '모계좌' 라 한다.) 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 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0%p를 제공한다.

1. 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모집좌수에 따라 연 0.1 ~ 0.3%p
2. 우체국 예·적금 첫 거래 고객 : 연 0.3%p
3.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 연 0.1%p
4. 이 적금 스마트뱅킹을 통해서 가입 시 : 연 0.1%p
5. 이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 연 0.2%p
6. 이 적금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 적용 : 연 0.2%p
7. 통신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연 0.2%p
8. 이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연 0.1%p
9.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해당 시 : 연 0.1%p
10. 이 적금 가입 시 본인 및 타인이 추천번호 입력 : 최고 연 0.2%p (각각 연 0.1%p)

(단위 : 연, %, %p)

<table>
<tr><th colspan="4">제공조건</th><th>우대이율</th></tr>
<tr><td rowspan="12">우대이율
(최고 1.0)</td><td rowspan="3">특판우대
(최고 0.3)</td><td rowspan="3">모집좌수</td><td>3,000좌 이상 ~ 6,000좌 미만</td><td>0.1</td></tr>
<tr><td>6,000좌 이상 ~ 10,000좌 미만</td><td>0.2</td></tr>
<tr><td>10,000좌 이상</td><td>0.3</td></tr>
<tr><td rowspan="9">거래실적 우대
(최고 0.7)</td><td colspan="2">우체국 예·적금 첫 거래 고객</td><td>0.3</td></tr>
<tr><td colspan="2">비대면 계좌개설 고객</td><td>0.1</td></tr>
<tr><td colspan="2">스마트뱅킹을 통한 가입</td><td>0.1</td></tr>
<tr><td colspan="2">이 적금 3년 만기 가입</td><td>0.2</td></tr>
<tr><td colspan="2">금리우대쿠폰</td><td>0.2</td></tr>
<tr><td colspan="2">통신비,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td><td>0.2</td></tr>
<tr><td colspan="2">적금 자동이체 실적</td><td>0.1</td></tr>
<tr><td colspan="2">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td><td>0.1</td></tr>
<tr><td colspan="2">추천번호 입력 (각각 0.1%p씩)</td><td>0.2</td></tr>
</table>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특판 우대이율은 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모집좌수에 따라 적용한다.

③ 거래실적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우체국 예·적금 첫 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거치식 예금

및 적립식 예금을 미보유한 경우

※ 보유계좌 기준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환매조건부채권, 국고귀속 계좌 미포함

2.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은 '우체국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 단, 비대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스마트뱅킹을 통한 가입」은 이 적금을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경우
4. 「이 적금 3년 만기 가입」은 이 적금을 3년으로 가입을 하고 만기해지 할 경우
5. 「금리우대쿠폰」은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입력 할 경우
6. 「통신비·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은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주]에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 주」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 단, 계좌간 자동이체, 예약이체 제외

7. 「적금 자동이체 실적」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만기까지 납입 횟수가 80% 이상을 자동이체 한 경우
8.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주]에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주」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9. 「추천번호 입력」은 신규 가입 시 타인의 추천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할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연 0.1%p씩, 최고 연 0.2%p까지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금리우대쿠폰】

① 이 예금은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 번호를 입력 할 경우 우대이율 (연 0.2%p)을 적용하는「금리우대쿠폰」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금리우대쿠폰」은 번호형태로 발급되며, 정해진 수량 내에서 우체국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고객이 신청 시 발급하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에게 제공한다.

③ 「금리우대쿠폰」은 고객번호 당 1개를 발급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 단, 판매기간 중 판매한도 달성 시 달성일 까지만 금리우대쿠폰 사용 가능

④ 「금리우대쿠폰」은 발급받은 고객 이외에 타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적금 가입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신상품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 중복적용 불가 및 상품 가입 후 중도해지 시 사용된 금리우대쿠폰 재사용 불가

⑤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한다.

제12조【목표달성 알림서비스】

① 이 예금은 가입 시「목표저축액」을 설정하였을 경우 목표 대비 저축현황에 대해 알려주는 「목표달성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목표저축액」은 100만원 이상 ~ 저축한도[주]」 내에서 설정 가능하다.

※ 주」저축한도 : 가입기간 (월수) x 월 저축한도 (최고 30만원)

③ 「목표달성 알림서비스」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 해당일 다음 영업일 마다 제공되며「목표저축액」달성 비율과 응원 메시지를 제공한다.

④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한다.

제13조【만기 축하 쿠폰서비스】

① 이 예금은 제12조 1항에서의 설정한「목표저축액」을 100% 달성하고 만기해지 하였을 경우 「만기 축하 쿠폰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만기축하쿠폰」은 모바일쿠폰 (5,000원 상당) 형태로 이 적금 만기일 다음 월 15일 이내에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한다.

③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한다.

제14조【기타 서비스】

① 이 예금은 스마트뱅킹에서 간편하게 추천번호 보내기를 할 수 있는 「상품간편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한다.

제15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6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7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8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9조【기타】

① 이 예금은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10,000 계좌로 한다.
④ 이 예금의 판매기간은 '18. 03. 05 ~ 06. 30까지로 한다.
※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부 칙

이 특약은 2018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6-13. 우체국 다모아 e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다모아 e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③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를 통해 출력 할 수 있다.
④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이하 '모계좌' 라 한다.) 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 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0%p를 제공한다.

1. 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모집좌수에 따라 연 0.1 ~ 0.3%p
2. 우체국 예·적금 첫 거래 고객 : 연 0.3%p
3. 이 적금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 적용 : 연 0.2%p
4. 이 적금 가입 시 본인 및 타인이 추천번호 입력 : 최고 연 0.2%p (각각 연 0.1%p)
5. 이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 연 0.2%p
6. 통신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연 0.2%p
7. 이 적금 스마트뱅킹을 통해서 가입 시 : 연 0.1%p
8. 이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연 0.1%p
9.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해당 시 : 연 0.1%p
10.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 연 0.1%p

(단위 : 연, %, %p)

<table>
<tr><th colspan="3">제공조건</th><th>우대이율</th></tr>
<tr><td rowspan="12">우대이율
(최고 1.0)</td><td rowspan="3">특판우대
(최고 0.3)</td><td>3,000좌 이상 ~ 6,000좌 미만</td><td>0.1</td></tr>
<tr><td>6,000좌 이상 ~ 10,000좌 미만</td><td>0.2</td></tr>
<tr><td>10,000좌 이상</td><td>0.3</td></tr>
<tr><td rowspan="9">거래실적 우대
(최고 0.7)</td><td>우체국 예·적금 첫 거래 고객</td><td>0.3</td></tr>
<tr><td>금리우대쿠폰 번호입력</td><td rowspan="4">각 0.2</td></tr>
<tr><td>추천번호 입력(각각 0.1%p씩)</td></tr>
<tr><td>이 적금 3년 만기 가입</td></tr>
<tr><td>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td></tr>
<tr><td>스마트뱅킹을 통한 가입</td><td rowspan="4">각 0.1</td></tr>
<tr><td>적금 자동이체 실적</td></tr>
<tr><td>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td></tr>
<tr><td>비대면 계좌개설 고객</td></tr>
</table>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특판 우대이율은 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모집좌수에 따라 적용한다.

③ 거래실적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우체국 예·적금 첫 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거치식 예금 및 적립식 예금을 미보유한 경우

※ 보유계좌 기준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환매조건부채권, 국고귀속 계좌 미포함

2. 「금리우대쿠폰」은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입력 할 경우

3. 「추천번호 입력」은 신규 가입 시 타인의 추천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할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연 0.1%p씩, 최고 연 0.2%p까지 적용한다.

4. 「이 적금 3년 만기 가입」은 이 적금을 3년으로 가입을 하고 만기해지 할 경우

5.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은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주]에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주」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 공과금 자동이체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6. 「스마트뱅킹을 통한 가입」은 이 적금을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경우

7. 「적금 자동이체 실적」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만기까지 납입 횟수가 80% 이상을 자동이체 한 경우

8.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주]에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주」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9.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은 '우체국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 단, 비대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금리우대쿠폰】

① 이 예금은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 번호를 입력 할 경우 우대이율 (연 0.2%p)을 적용하는「금리우대쿠폰」서비스를 제공한다.

②「금리우대쿠폰」은 번호형태로 발급되며, 정해진 수량 내에서 우체국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고객이 신청 시 발급하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에게 제공한다.

③ 「금리우대쿠폰」은 고객번호 당 1개를 발급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 단, 판매기간 중 판매한도 달성 시 달성일 까지만 금리우대쿠폰 사용 가능

④ 「금리우대쿠폰」은 발급받은 고객 이외에 타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적금 가입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신상품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 중복적용 불가 및 상품 가입 후 중도해지 시 사용된 금리우대쿠폰 재사용 불가

⑤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한다.

제12조【목표달성 알림서비스】

① 이 예금은 가입 시「목표저축액」을 설정하였을 경우 목표 대비 저축현황에 대해 알려주는 「목표달성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목표저축액」은 100만원 이상 ~ 저축한도주」 내에서 설정 가능하다.

※ 주」저축한도 : 가입기간 (월수) x 월 저축한도 (최고 30만원)

③ 「목표달성 알림서비스」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 해당일 다음 영업일 마다 제공되며「목표저축액」달성 비율과 응원 메시지를 제공한다.

④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한다.

제13조【만기 축하 쿠폰서비스】

① 이 예금은 제12조 1항에서의 설정한「목표저축액」을 100% 달성하고 만기해지 하였을 경우 「만기 축하 쿠폰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만기축하쿠폰」은 모바일쿠폰 형태로 이 적금 만기일 다음 월 15일 이내에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한다.

③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한다.

제14조【기타 서비스】

① 이 예금은 스마트뱅킹에서 간편하게 추천번호 보내기를 할 수 있는 「상품 간편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한다.

제15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6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7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8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9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10,000 계좌로 한다.
④ 이 예금의 판매기간은 '19. 2. 1. ~ 4. 30.까지로 한다.
※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14. 우체국 Smart퍼즐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Smart퍼즐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③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④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최대 저축한도는 2,000만원이며 매 분기 30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이 예금의 목표금액 설정은 신규 가입 시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이다.

⑤ 목표금액 설정은 중도변경이 불가하나 가입기간 중 최대 저축한도 이내로

목표금액 초과 입금이 가능하다. (단,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시 목표금액 초과 입금은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설정금액 이내로 가능하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2%p를 제공한다.

1. 추천우대이율 : 신규 가입 시 생성되는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할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연 0.1%p (단, 가입 시 생성된 추천번호는 최고 연 0.2%p 우대이율 획득 시 사용 불가)
2. 목표금액 달성이율 : 신규 가입 시 고객이 설정한 목표금액을 해지 시까지 달성할 경우 연 0.5%p
3. 자동이체 우대이율 : 신규 가입 시 적금 자동이체 1만원 이상 설정 후 해지 시까지 유지할 경우 연 0.2%p
4. 퍼즐완성이율 : 해지 시까지 퍼즐미션 수행으로 제공된 스탬프 총 수량에 따라 최고 연 0.3%p

<스탬프 총 수량>

예치기간 / 우대이율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연 0.3%p	20장이상	30장이상	40장이상	50장이상	60장이상	80장이상	100장이상
연 0.2%p	10장이상 ~ 19장이하	15장이상 ~ 29장이하	20장이상 ~ 39장이하	25장이상 ~ 49장이하	30장이상 ~ 59장이하	40장이상 ~ 79장이하	50장이상 ~ 99장이하
연 0.1%p	9장이하	14장이하	19장이하	24장이하	29장이하	39장이하	49장이하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목표금액을 달성하여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이율에 특별중도해지 시까지 충족한 항목별 우대이율을 합산한다.

제14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퍼즐적금 알리미 서비스' 에 의하여 퍼즐이체 시 스탬프가 제공된다.

④ '퍼즐적금 알리미 서비스' 제공여부는 선택이 가능하나 고객의 거부 등으로 우대이율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15. 우체국 e-포인트 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e-포인트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월51만원으로 적금 월 저축 50만원 및 체크카드 '포인트 저축' 월 1만원 (1만 포인트) 이하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7%p를 제공한다.

1. 「포인트 저축」 약정으로 포인트 저축 성공 시 : 최고 연 0.3%p
2. 이 적금 자동이체 약정으로 매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연 0.1%p
3. 상품 가입 시 본인 및 타인이 추천번호 입력 시 : 각각 연 0.1%p, 최고 연 0.2%p

4. 스마트뱅킹 가입 후 1개월 이내 스마트뱅킹으로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 연 0.1%p

구 분	제공조건			우대이율
포인트저축	「포인트 저축」 약정으로 포인트 저축 성공* 시 * 가입기간의 1/2 이상 실적 해당	포인트 약정 금액	1,000p 이상 ~ 3,000p 미만	연 0.1%p
			3,000p 이상 ~ 5,000p 미만	연 0.2%p
			5,000p 이상 ~ 10,000p 이하	연 0.3%p
자동이체	이 적금 자동이체 약정으로 매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가입기간의 80% 이상 자동이체 실적 해당			연 0.1%p
추천번호	상품 가입 시 본인 및 타인이 추천번호 입력 시 각각 연 0.1%p			최고 연 0.2%p
스마트거래	스마트뱅킹 가입 후 1개월 이내 스마트뱅킹으로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연 0.1%p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포인트 저축」 우대이율은 전체 가입기간 중 '포인트 저축' 약정으로 입금된 횟수가 가입기간 월수의 1/2 이상에 해당할 경우 포인트 약정금액 구간별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 포인트 저축 실적은 연속적인 발생 실적 외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하며 가입기간 월수 1/2의 개월수가 소수점까지 나올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 처리함

③ 「자동이체 우대」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약정을 하고 만기까지 납입 횟수가 80% 이상을 자동이체 한 경우 적용한다.

④ 「추천번호 우대」는 신규 가입 시 타인의 추천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할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연 0.1%p씩, 최고 연 0.2%p 까지 적용한다.

※ 가입 시 생성된 본인의 추천번호는 타인 2명까지 사용가능

⑤ 「스마트거래 우대」는 스마트뱅킹 서비스 가입 후 가입 월을 포함하여 다음 월 말일까지 이 적금을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할 경우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포인트 저축 서비스】

① 이 예금은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매월 자동으로 저축하는 「포인트 저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 예금 신규 가입 시 「포인트 저축」약정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약정 금액은 매월 1,000p 이상 10,000p 이하, 1,000p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 신규 가입 시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1,000p 미만 또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미보유하더라도「포인트 저축」약정이 가능하며「포인트 저축」기간 중 포인트가 1,000p 이상일 경우「포인트 저축」약정에 따라「포인트 저축」실행

③「포인트 저축」약정일은 매월 5일이며 「포인트 저축」 기간은 이 적금 가입 다음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 이다.

1.「포인트 저축」은 매월 5일 18시 이후에 실행되며 약정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 저축 실행

2.「포인트 저축」 약정일에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가 약정금액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의 포인트 저축은 실행되지 않음

3. 이 예금의 비과세 저축한도 초과, 해지 등으로「포인트 저축」불능 사유 발생 시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로 다시 환원 처리

④ 이 예금 가입기간 중「포인트 저축」약정 해지는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가능하나 포인트 저축 약정일, 약정금액 등「포인트 저축」약정 사항의 변경 및 재 약정은 불가하다.

⑤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2조【포인트 이자 서비스】

① 이 예금은 만기 이자의 일반과세 세율 상당(최고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포인트 이자」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의한 일반과세 세율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가입 시 기준으로 적용 (단, 최고 15.4% 초과 적용 불가)

② 「포인트 이자」 서비스는 우대이율 항목 중 '포인트 저축'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월의 다음 월 5일 이내에 제공한다.

※ 「포인트 저축」 우대 조건 : 전체 가입기간 중 '포인트 저축' 약정으로 입금된 횟수가 가입기간 월수의 1/2 이상에 해당할 경우

※ 「포인트 이자」 서비스는 포인트 적립 시점에 우체국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

③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3조【기타 서비스】

① 이 예금은 포인트 저축 약정 시 선택한 고객에 한하여 포인트 저축 실행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 저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 예금은 스마트뱅킹에서 간편하게 추천번호 보내기를 할 수 있는 「상품 간편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4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6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7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분할해지, 양도, 승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16.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천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45%p를 제공한다.

1. 우체국 적금 첫 거래 고객 우대 : 연 0.1%p
2. 적금 자동이체 고객 우대 : 연 0.15%p
3. 신한카드 결제대금 출금실적 우대 : 연 0.2%p

(단위 : 연 %p)

우대이율 제공조건	우대이율
· 우체국 적금 첫 거래* 고객 우대 (* 최근 1년 이내 적금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0.10
· 적금 자동이체 고객 우대	0.15
· 신한카드 결제대금 출금실적 우대	0.20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적금 첫 거래」는 신규 가입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우체국 적립식 예금의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로 가입 시점에 적용
2. 「적금 자동이체」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만기까지 8회 이상을 자동이체한 경우 적용
3. 「신한카드 결제대금 출금실적」은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지정하고 신규 가입일부터 만기일의 전전월 말일까지 기간 중 신한카드 결제대금 출금실적*이 있을 경우 적용

※ 신용카드 즉시결제(선결제, 연체결제 등) 제외, 승인취소·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제휴이벤트】

① 이 예금은 신한카드 제휴이벤트 이용조건에 따라 「특별리워드」를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며, 「특별리워드」제공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② 해당 사항이 사전에 고지된 바와 다르게 변경될 경우 신한카드사 및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제12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4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5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의 판매기간은 2020. 11. 16. ~ 2021. 06. 30. 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1. 환매조건부채권 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하 '조건부채권매도'라 한다)업무를 영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매조건부채권(이하 '조건부채권'이라 한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채권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조건부채권매도의 내용】

① 조건부채권매도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건부채권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필요 시 액면을 분할할 수 있다.

③ 분할매도 시 최저 한도액은 50,000원으로 하고 10,000원 단위로 초과할 수 있다.

제3조 【조건부채권매도의 성립 등】

① 조건부채권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우체국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환매수】

고객은 약정기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환매수 가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환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10원 단위로(10원 미만 절사) 계산한다.

o 환매수가격 = 조건부채권매도가격 × (1 + 약정일수/365 × 조건부채권매도이율)

② 조건부채권매도 약정기간중에 매도된 채권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원천징수차액을 차감)은 제1항의 환매수 가격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산식 중 조건부채권매도이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이율을 적용

KOR 우정사업본부

한다.

④ 제1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6조 【이율의 게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건부채권매도 이율표를 고시한 후 우체국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건부채권매도에 있어서 약정기일전후에 환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중도환매수이율은 환매일수일까지의 해당 기간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매도채권의 보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매도채권을 보관,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수 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된 매매계산서와 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계산서는 환매수일이 확정된 경우 교부할 수 있으며, 통장에 환매수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채권이 환매수일 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매도채권의 종목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환매수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계좌의 폐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잔고가 '0'이 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1조 【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채권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인감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통장이나 신고인감을 분실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우체국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이 약관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약관을 우체국에 비치하고 고객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법규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도 증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양도 등의 제한】

고객은 통장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 유증판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